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2023. 1



고용노동부

■ 토론회 개요

■ 발제자료

- (발제1) 2022년 중대재해 현황 3
 ↳ 강검윤(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 (발제2)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현황 및 과제 21
 ↳ 전형배(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3)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 31
 ↳ 김성룡(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료

- (토론1) 한국경영자총협회 49
 ↳ 임우택 본부장
- (토론2) 중소기업중앙회 56
 ↳ 서정현 실장
- (토론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62
 ↳ 김광일 본부장
- (토론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68
 ↳ 최명선 실장
- (토론5) 코카콜라음료 74
 ↳ 김동하 파트너

[중대법 시행 1년] '중대법 시행현황 및 과제' 토론회 개요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을 돌아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향 모색

□ 일시: '23.1.26(목), 14:00~16:30

□ 장소: 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

□ 운영

○ (발제)

❶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특징'

❷ (김성룡 교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

❸ (전형배 교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현황 및 과제

○ (패널토론) 좌장: 정재희 교수(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임우택(경충 안전보건본부장)

서정현(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광일(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김동하(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

□ 진행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인사말	권기섭 차관
14:05~14:10	참석자 인사	사회자: 정재희 교수(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대표)
14:10~15:00	발제 *발제자별 20분 이내	· 발제①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특징 (10분) · 발제②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 (20분) · 발제③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현황 및 과제 (20분)
15:00~16:20	토론	· 토론, 질의응답
16:20~16:30	마무리	사회자

발제 자료

2022년 중대재해 현황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



고용노동부



목 차



I. '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세부 현황	7
II. '22년 중대재해 규모·업종·사고유형·기인물별 세부 현황	9
1. 규모별 현황	9
2. 업종별 현황	9
3. 재해유형별 현황	11
4. 기인물별 현황	14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현황	19

I. '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세부 현황

1. '22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1.1.~12.31.)

□ (총괄) '22년 644명(611건) 사고사망자 발생,
전년 683명(665건) 대비 39명(5.7%), 54건(8.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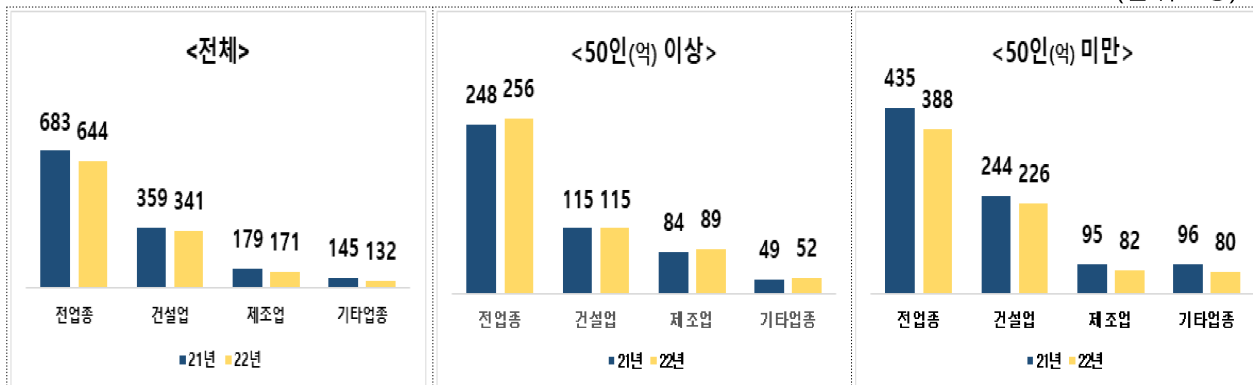
* ▲(건설) 341명(△18명, 5.0%) ▲(제조) 171명(△8명, 4.5%) ▲(기타) 132명(△13명, 9.0%)

□ (50인 이상) '22년 256명(230건) 사고사망자 발생,
전년 248명(234건) 대비 8명(3.2%) 증가, 4건(1.7%) 감소

□ (50인 미만) '22년 388명(381건) 사고사망자 발생,
전년 435명(431건) 대비 47명(10.8%), 50건(11.6%) 감소

['22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단위: 명)



(단위: 건, 명, %)

구분		전업종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계	50인(억) 미만	50인(억) 이상	계	50인(억) 미만	50인(억) 이상	계	50인(억) 미만	50인(억) 이상	계	50인(억) 미만	50인(억) 이상
사망자수	'21년	683	435	248	359	244	115	179	95	84	145	96	49
	'22년	644	388	256	341	226	115	171	82	89	132	80	52
증감		△39	△47	+8	△18	△18	-	△8	△13	+5	△13	△16	+3
증감률		(△5.7)	(△10.8)	(+3.2)	(△5.0)	(△7.4)	-	(△4.5)	(△13.7)	(+6.0)	(△9.0)	(△16.7)	(+6.1)
사고건수	'21년	665	431	234	353	243	110	169	93	76	143	95	48
	'22년	611	381	230	328	224	104	163	82	81	120	75	45
증감		△54	△50	△4	△25	△19	△6	△6	△11	+5	△23	△20	△3
증감률		(△8.1)	(△11.6)	(△1.7)	(△7.1)	(△7.8)	(△5.5)	(△3.6)	(△11.8)	(+6.6)	(△16.1)	(△21.1)	(△6.3)

2. '22.1.27. 이후 중대재해 현황(1.27.~12.31.)

□ (총괄) 사고사망자 596명(568건) 발생,

전년 동기 640명(624건) 대비 44명(6.9%), 56건(9.0%) 감소

* ▲(건설) 316명(△27명, 7.9%) ▲(제조) 154명(△14명, 8.3%) ▲(기타) 126명(△3명, 2.3%)

□ (50인 이상) 사고사망자 231명(210건) 발생,

전년 동기 232명(219건) 대비 1명(0.4%), 9건(4.1%) 감소

□ (50인 미만) 사고사망자 365명(358건) 발생,

전년 동기 408명(405건) 대비 43명(10.5%), 47건(11.6%) 감소

【'22.1.27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전업종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계	50인(약)미만	50인(약)이상	계	50인(약)미만	50인(약)이상	계	50인(약)미만	50인(약)이상	계	50인(약)미만	50인(약)이상
사망자수	'21년	640	408	232	343	235	108	168	89	79	129	84	45
	'22년	596	365	231	316	215	101	154	74	80	126	76	50
증감		△44	△43	△1	△27	△20	△7	△14	△15	+1	△3	△8	+5
증감률		(△6.9)	(△10.5)	(△0.4)	(△7.9)	(△8.5)	(△6.5)	(△8.3)	(△16.9)	(+1.3)	(△2.3)	(△9.5)	(+11.1)
사고건수	'21년	624	405	219	337	234	103	160	88	72	127	83	44
	'22년	568	358	210	308	213	95	146	74	72	114	71	43
증감		△56	△47	△9	△29	△21	△8	△14	△14	0	△13	△12	△1
증감률		(△9.0)	(△11.6)	(△4.1)	(△8.6)	(△9)	(△7.8)	(△8.8)	(△15.9)	(0.0)	(△10.2)	(△14.5)	(△2.3)

II. '22년 중대재해 규모·업종·사고유형·기인물별 세부 현황

1. 규모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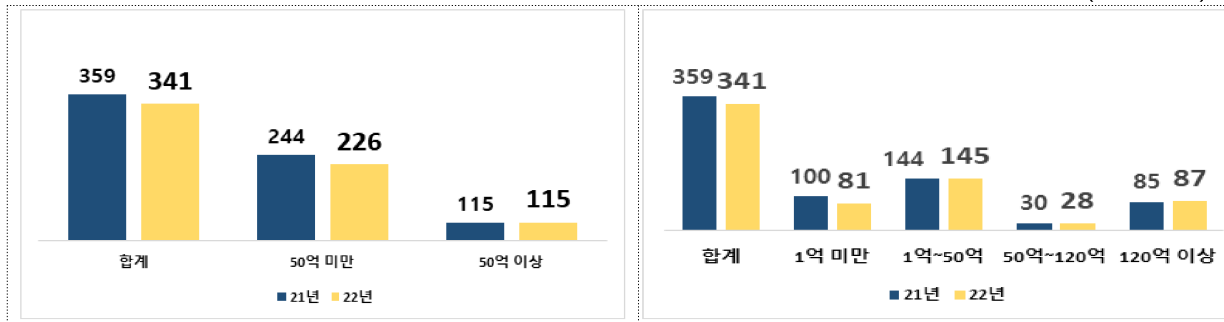
- (총괄) 50인(억) 미만에서 전체 사고사망자의 60.2% 발생
 - 50인(억)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4건 감소하였으나, 사고사망자는 8명 증가
- (50인 이상) 256명(230건)의 사고사망자 발생,
전년 248명(234건) 대비 8명(3.2%) 증가, 4건(1.7%) 감소
 - * ▲(건설) 115명(전년과 동일) ▲(제조업) 89명(+5명, 6.0%) ▲(기타업종) 52명(+3명, 6.1%)
- 화재·폭발, 무너짐 등 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가 5건 증가(8→13건), 사망자 수도 39명으로 전년(22명) 대비 17명, 77.3% 증가
- (50인 미만) 388명(381건)의 사고사망자 발생,
전년 435명(431건) 대비 47명(10.8%), 50건(11.6%) 감소
 - * ▲(건설) 226명(△18명, 7.4%) ▲(제조) 82명(△13명, 13.7%) ▲(기타) 80명(△16명, 16.7%)

2. 업종별 현황

- (총괄) 건설업(53.0%), 제조업(26.6%)에서 79.6% 발생
 - * '21년도의 경우 건설업(52.6%), 제조업(26.2%)이 전체의 78.8% 발생
- 건설업은 341명(328건), 제조업은 171명(163건), 기타업종은 132명(120건)
- 전년 대비 건설업에서 18명(5.0%), 25건(7.1%) 감소,
제조업에서는 8명(4.5%), 6건(3.6%) 감소,
기타업종은 13명(9.0%), 23건(16.1%) 감소하여 소 업종에서 감소
-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341명(53.0%)으로 전년 대비 18명(5.0%) 감소
 - 특히, 1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전년 대비 19명(19.0%) 감소

【건설업 규모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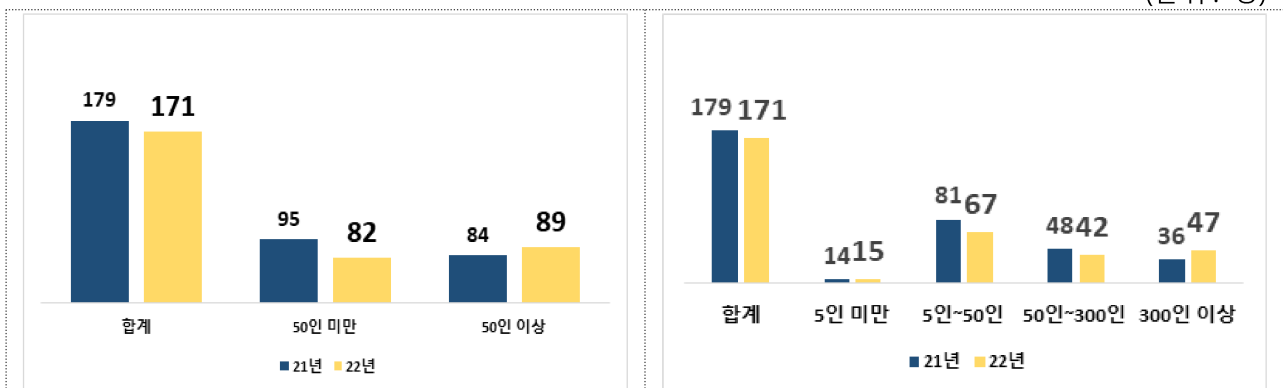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합계	500만 미만	1억 미만	1~50억	500만 이상	50~120억	120억 이상
'21년	359	244	100	144	115	30	85
'22년	341	226	81	145	115	28	87
전년 대비 증감(률)	△18 (△5.0)	△18 (△7.4)	△19 (△19.0)	+1 (+0.7)	0 (0.0)	△2 (△6.7)	+2 (+2.4)

-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171명(26.6%)으로 전년 대비 8명(4.5%) 감소
- 50인 미만에서 사고사망자가 82명(48.0%)으로 전년 대비 13명(13.7%) 감소
 - 특히, 5인 이상 50인 미만에서 사고사망자는 67명으로 전년 대비 14명(17.3%) 감소
 - 반면에, 50인 이상에서는 증가
 - 특히, 300인 이상에서 사고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 대비 11명(30.6%) 증가하였는데,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14명으로 29.8%의 비중을 차지

【제조업 규모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단위: 명)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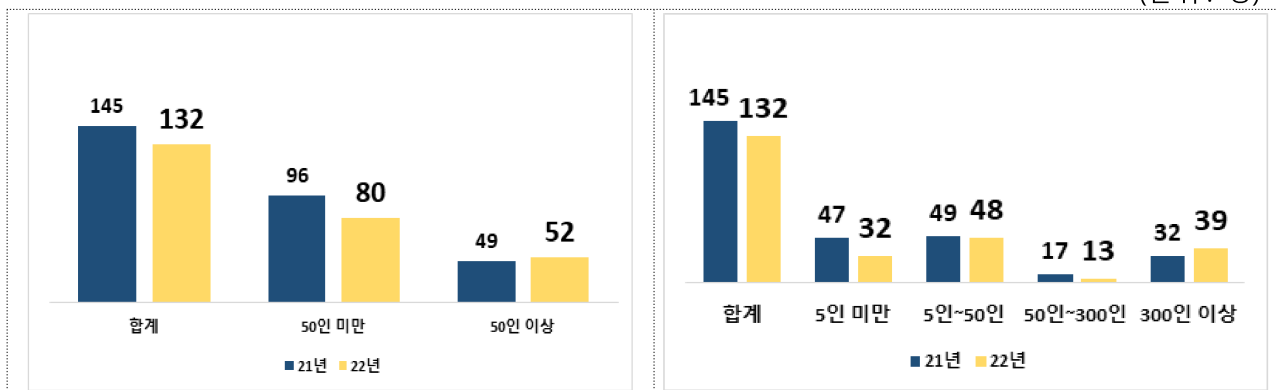
구분	합계	50인 미만	5인 미만	5~50인	50인 이상	50~300인	300인 이상
'21년	179	95	14	81	84	48	36
'22년	171	82	15	67	89	42	47
전년 대비 증감(률)	△8 (△4.5)	△13 (△13.7)	+1 (+7.1)	△14 (△17.3)	+5 (+6.0)	△6 (△12.5)	+11 (+30.6)

□ (기타업종) 사고사망자는 132명(20.5%)으로 전년 대비 13명(9.0%) 감소

- 특히 5인 미만에서 32명으로 전년 대비 15명(31.9%) 감소
- 반면, 50인 이상에서는 52명으로, 전년 대비 3명(6.1%)이 증가,
특히 300인 이상에서 사고사망자는 39명으로 전년 대비 7명(21.9%) 증가

【기타업종 규모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단위: 명)



(단위: 명, %)

구분	합계	50인 미만	5인 미만	5~50인	50인 이상	50~300인	300인 이상
'21년	145	96	47	49	49	17	32
'22년	132	80	32	48	52	13	39
전년 대비 증감(률)	△13 (△9.0)	△16 (△16.7)	△15 (△31.9)	△1 (△2.0)	+3 (+6.1)	△4 (△23.5)	+7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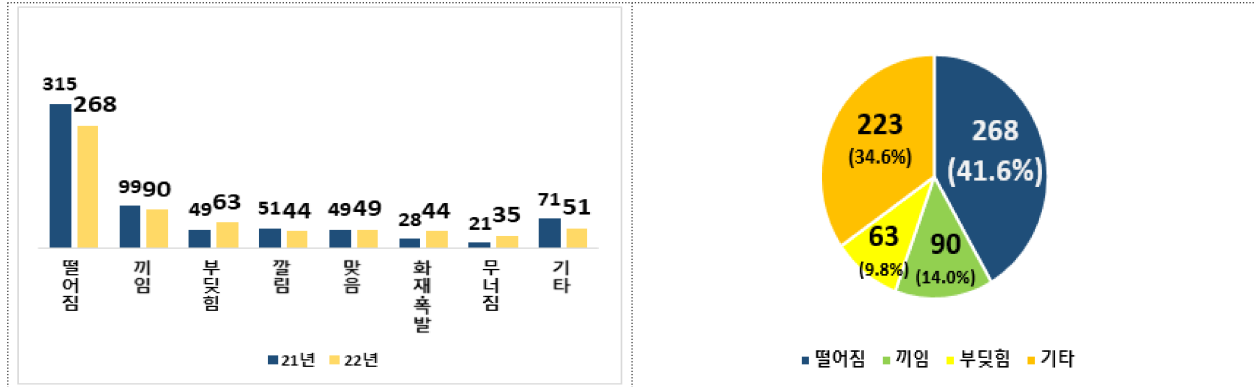
3. 재해유형별 현황

□ 총 괄

- 떨어짐 268명(41.6%), 끼임 90명(14.0%) 부딪힘 63명(9.7%) 등 3대 사고 유형이 총 421명으로 65.3% 차지, 전년 463명 대비 42명(9.1%) 감소
- 다만, 무너짐(66.7%), 화재·폭발(57.1%)이 큰 폭으로 증가함

【재해유형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단위: 명)



(단위: 명, %)

구분	합계	떨어짐	끼임	부딪힘	깔림 뒤집힘	맞음	화재폭발	무너짐	기타
'21년	683	315	99	49	51	49	28	21	71
'22년	644	268	90	63	44	49	44	35	51
전년 대비 증감(률)	△39 (△5.7)	△47 (△14.9)	△9 (△9.1)	+14 (+28.6)	△7 (△13.7)	0 (0.0)	+16 (+57.1)	+14 (+66.7)	△20 (△28.2)

□ 무너짐 중대재해 발생 현황

- 광주 주상복합 붕괴사고(1.11, 사망 6명)를 시작으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1.29, 사망 3명),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10.21, 사망 3명) 등 “무너짐”으로 35명(25건)의 사고사망자가 발생
- '21년 “무너짐” 21명(21건)의 사고사망자에 비해 14명(66.7%) 증가
- 굴착작업(12명, 11건)과 건물·구조물 해체작업(5명, 5건), 콘크리트 타설작업(9명, 2건)에서 26명(74.3%)의 사고사망자 발생

【“무너짐” 중대재해 중 작업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합계		굴착작업		건물·구조물 해체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기타*	
	사망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사고건수
'21년	21	21	9	9	5	5	2	2	5	5
'22년	35	25	12	11	5	5	9	2	9	7

* 채석장 천공작업 중 토사 붕괴, 덕트 내부 분진 제거작업 중 슬러지 붕괴 등

○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 사망한 사고는 모두 데크플레이트 공법에서 발생하였으며

- 특히, 데크플레이트 타설작업 중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도 3건 발생(11명 부상)

* 한 번의 사고로 다수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22년 데크플레이트 타설작업 중 재해 현황】

연번	업체명	재해일자	소재지	사고개요	재해현황
1	현000	22.1.11.	광주 서구	○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데크플레이트) 등이 붕괴되어 매몰	사망 6명
2	코000	22.4.9.	대전 중구	○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바닥이 무너져 떨어짐	부상 4명
3	한000	22.7.27.	대전 중구	○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슬라브가 무너져 기초 바닥으로 떨어짐	부상 3명
4	태000	22.9.30.	경기 이천시	○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시스템동바리가 구부러지며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되어 떨어짐	부상 4명
5	에000	22.10.21.	경기 안성시	○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되어 매몰	사망 3명 부상 2명

□ 화재·폭발 중대재해 발생 현황

○ 여수산단 열교환기 폭발사고(2.11, 사망 4명), 대전 아울렛 화재사고(9.26, 사망 7명) 등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44명(30건)으로 전년 대비 16명(10건) 증가

- 특히,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감천항 바지선 폭발(8.12, 2명 사망), 대구 LPG 충전소 폭발(11.16, 2명 사망) 등 소 업종에 걸쳐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

【“화재·폭발”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합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사망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사고건수
'21년	28	20	1	1	17	10	10	9
'22년	44	30	3	3	22	17	19	10

○ 최근 3년간 국가산업단지(대산, 울산, 여수)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로 13명(7건)이 사망하였으며

-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의 설비들이 노후화되어 이를 정비·보수·증설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최근 3년간 3개 화학국가산업단지 “화재·폭발” 중대재해 발생 현황】

연번	업체명	재해일자	소재지	사고개요	재해현황
1	엘000	20.5.19.	충남 서산시	○ 촉매제품을 촉매포장용기에 포장 중 화재	사망 1명 부상 2명
2	캐000	20.5.30.	울산 울주군	○ 열분해 유화공정 가동 중 폐가스에 의한 화재	사망 1명
3	이000	21.12.13.	전남 여주시	○ 유증기 회수 배관 연결을 위해 용접작업 중 폭발	사망 3명
4	여000	22.2.11.	전남 여주시	○ 열교환기 청소작업 후 기밀시험 중 고압에 의한 폭발	사망 4명 부상 4명
5	에000	22.4.20.	울산 남구	○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이물질 제거작업 중 원인 미상의 화재	사망 2명
6	에000	22.5.19.	울산 울주군	○ 컴프레셔 후단 밸브 정비작업 중 원인미상의 폭발	사망 1명 부상 9명
7	에000	22.8.31.	울산 남구	○ 재생작업 후 설비의 밸브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중 인화성 가스가 분출되며 원인미상의 폭발	사망 1명

4. 기인물별 현황

□ (현황) 12대 기인물*에서 309명(48.0%)의 사고사망자 발생

* 12대 기인물: ①단부/개구부, ②지붕, ③사다리, ④크레인, ⑤굴착기, ⑥비계/발판, ⑦지게차, ⑧고소작업대, ⑨철골, ⑩거푸집동바리, ⑪화물운반트럭, ⑫달비계

○ 단부/개구부, 크레인, 지게차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15명으로 전년 대비 17명(17.3%) 증가한 반면,

- 지붕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33명으로, 전년 대비 19명(36.5%) 감소

【업종별 주요 기인물 중대재해 발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주요 증가 기인물			주요 감소 기인물	합계
	단부 및 개구부	크레인	지게차	지붕	
21년	53	27	18	52	205
22년	61	31	23	33	207
전년대비 증감(률)	+8 (+15.1)	+4 (+14.8)	+5 (+27.8)	△19 (△36.5)	+2 (+1.0)

□ (단부/개구부) 전 업종에서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기인물로
전년 53명 대비 8명 증가한 61명 발생

○ 특히 건설업에서 전년 대비 13명(34.2%) 증가한 5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

- 다만, 제조업(3명, 37.5%)과 기타업종(2명, 28.6%)은 전년 대비 감소

【단부 및 개구부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21년	53	38	8	7
'22년	61	51	5	5
전년 대비 증감(률)	+8 (+15.1)	+13 (+34.2)	△3 (△37.5)	△2 (△28.6)

○ 특히, 건설업 규모별로는 5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자가
32명(62.7%)으로 대부분 중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였으며

- 모두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가 원인으로 판단됨

【건설업 규모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50인(억) 미만	5인(1억) 미만	5인~50인 (1~50억)	50인(억) 이상	50~300인 (50~120억)	300인 이상 (120억)
'21년	38	24	6	18	14	3	11
'22년	51	32	4	28	19	7	12
전년 대비 증감(률)	+13 (+34.2)	+8 (+33.3)	△2 (△33.3)	+10 (+55.6)	+5 (+35.7)	+4 (+133.3)	+1 (+9.1)

👉 (안전조치) 단부 개구부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①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고 ②**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덮개를 덮어서 고정해야 하며,
③ **개구부 덮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2년 단부 및 개구부에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연번	재해 발생일	업체명(비공개)	사고개요	재해현황
1	2.19.(토)	○○○씨	○ 노후 선박 내부통로 난간 보수 작업 중 떨어짐	사망 1명
2	4.22.(금)	○○○티	○ 공장 내 2층 연구실 옆에서 안전난간을 개방하여 자재를 인양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짐	사망 1명
3	6.28.(화)	○○학교	○ 교내 비탈면에 쓰러진 나무 정리하던 중 옹벽에서 떨어짐	사망 1명

□ **(크레인) 전년 27명 대비 4명이 증가한 31명의 사고사망자 발생**

○ 특히 건설업에서 전년 대비 4명(26.7%) 증가한 1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

-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 12명 대비 5명 감소한 반면, 맞음 사고사망자는 13명으로 전년 6명 대비 7명 증가

* 붐대 위에서 연장작업 중 떨어짐, 크레인 슬링벨트를 잡고 지붕에서 내려오던 중 떨어짐 등

○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는 3명으로 전년 5명 대비 2명(40%) 감소, “이동식 크레인” 관련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2배 증가(+8명)한 16명으로 급증**

- 특히,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인양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의 붐대가 부러지거나 로프가 끊어지며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맞아 사망한 경우가 7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
- 또한, 제조업에서 천장크레인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도 전년 대비 1명이 증가한 11명이 발생하였는데,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인양작업 중 중량물에 맞아 사망한 경우가 4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

【크레인에서 발생한 유형별 중대재해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맞음	떨어짐	부딪힘	끼임	기타
'21년	27	6	12	2	7	0
'22년	31	13	7	3	4	4
전년 대비 증감(률)	+4 (+14.8)	+7 (+116.7)	△5 (△41.7)	+1 (+50.0)	△3 (△42.9)	+4 (-)

👉 (안전조치) 크레인 작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①정격하중 준수 및 인양물 고정철저 👉 중량물 낙하방지
- ②인양작업 하부 출입통제 및 작업지휘자 배치 👉 ‘맞음’ 재해 예방
- ③(건설) 이동식크레인 아웃트리거 설치 👉 차량 전도 방지
- ④(제조) 천장크레인 레일상부 임의출입 금지 👉 ‘떨어짐’, ‘끼임’ 재해예방

【22년 크레인에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연번	재해 발생일	업체명(비공개)	사고개요	재해현황
1	7.14.(목)	○○건설	○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중 텔레스코핑 케이지와 함께 추락	사망 1명
2	9.4.(일)	○○건설	○ 철근 인양 작업 중 크레인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머리에 맞음	사망 1명
3	11.22.(화)	㈜○○티	○ 케이블드럼을 크레인으로 인양 중 로프가 끊어져 맞음	사망 1명

□ (지게차) 사고사망자가 23명(+5명, 27.8%)* 발생

특히,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10명(43.4%)으로 가장 많이 발생

* ▲(제조업) 15명(65.2%) ▲(기타업종) 6명(26.1%) ▲(건설업) 2명(8.7%)

- 지게차는 운전, 하역작업, 적재작업 중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지게차로 발생한 “깔림·뒤집힘” 및 “끼임”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각각 2배씩 증가하여 16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

【지게차에서 발생한 유형별 중대재해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깔림뒤집힘	끼임	부딪힘	떨어짐	맞음
'21년	18	5	3	5	4	1
'22년	23	10	6	3	3	1
전년 대비 증감(률)	+5 (+27.8)	+5 (+100.0)	+3 (+100.0)	△2 (△40.0)	△1 (△25.0)	0 (0.0)

- ☞ (안전조치) 지게차 3대 안전수칙인 ①지게차 자격 보유자 및 지정자 운전
②전·후방 시야 확보 ☞ 부딪힘·끼임 방지
③안전벨트 착용 준수 ☞ 기계 전도 시 깔림·뒤집힘 방지 등만 준수하여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음

【22년 지게차에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연번	재해 발생일	업체명(비공개)	사고개요	재해현황
1	5.10.(화)	○○산업	○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지게차가 전도되어 깔림	사망 1명
2	6.10.(금)	○○공업	○ 트럭에 적재된 제품을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제품이 반대편으로 떨어져 재해자가 맞음	사망 1명
3	6.18.(토)	○○섬유	○ 지게차 포크에 올라가 환풍기를 설치하던 중 떨어짐	사망 1명

□ (지붕) 전년 대비 19명(36.5%)이 감소한 33명 입

- 특히, 지붕사고는 5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28명이 발생하여 전체 사고사망자의 84.8%를 차지함

* '22년도 지붕 떨어짐 사고사망자: ▲(건설) 28명(84.8%) ▲(축사 등) 5명(15.2%)

【건설현장 규모별 지붕에서 떨어짐 중대재해 발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건설공사 합계	50억 미만			50억 이상		
				1억 미만	1~50억		50~120억	120억 이상
'21년	52	38	34	21	13	4	1	3
'22년	33	28	28	19	9	0	0	0
전년 대비 증감(률)	△19 (△36.5)	△10 (△26.3)	△6 (△17.6)	△2 (△9.5)	△4 (△30.8)	△4 (△100.0)	△1 (△100.0)	△3 (△100.0)

- 특히, 날이 풀리는 시기인 봄(3~5월, 12명)과 장마와 집중호우가 지나고 쌀쌀해지는 가을(9월~11월, 12명)에 주로 발생(24명, 72.7%)

👉 (안전조치) 먼저, ① 고소작업대 등을 활용하여 가급적 지붕 밑에서 작업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는 ②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하고, ③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④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토록 조치

☎ 중소 건설업체에게는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의 70% 지원(052-703-0767)

☎ 1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는 무료 기술지원 신청 가능(052-703-0324)

【22년 지붕에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연번	재해 발생일	업체명(비공개)	사고개요	재해현황
1	3.15.(화)	○○산업개발	○ 지붕슬레이트 철거작업 중 슬레이트 파손으로 추락	사망 1명
2	4.18.(월)	(주)○흥	○ 지붕에서 판넬작업 준비 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추락	사망 1명
3	9.14.(수)	○연	○ 채광창 위에서 강판 덮는 작업 중 노후된 채광창을 밟고 추락	사망 1명

□ 총 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2.12.31.까지 총 229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이 중 52건(22.7%)의 사건을 처리함

구분	발생	송치	기소	내사종결	수(내)사 중	사건처리율 (송치+내사종결)/발생
'22년(1.1~12.31)	229	34	11	18	177	22.7

□ 내사종결

- 중대재해에 대한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함” 8건(44.4%),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등 “법 적용 대상 아님” 3건(16.7%), ▲ “지배·운영·관리 범위 외” 3건(16.7%), ▲ 개인지병 등 “기타” 4건(22.2%) 등 법 위반이 없는 18건의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

【내사종결 사건현황】

(단위: 건, %)

합계	법 위반 없음이 명확		법 적용대상 아님		지배·운영·관리 범위 외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8	8	44.4	3	16.7	3	16.7	4	22.2

□ 기소송치

- (총괄) 사망 32건, 직업성 질병 2건 등 34건의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 (업종별) 제조업 16건(47.0%), 건설업 14건(41.2%), 기타업종 4건(11.8%)

【업종별 사건송치 현황】

(단위: 건, %)

계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	
		비중		비중		비중
34	16	47.1	14	41.2	4	11.8

- (규모별) 전체 송치사건의 절반(50.0%)이 300명 미만의 중·소 규모 기업, 1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사건

【규모별 사건송치 현황】

(단위: 건, %)

제조·기타										건설업							
계	50~100인	100~300인	300~1,000인	1,000인~	계	50~120억	120~800억	800억~		계	50~120억	120~800억	800억~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	100	4	20.0	5	25.0	6	30.0	5	25.0	14	100	8	57.1	5	35.7	1	7.1

- **(재해유형별)** 「떨어짐」 12건(35.3%), 「끼임」 8건(23.5%) 사고 등이 송치 사건의 58.8%를 차지함

【재해유형별 사건송치 현황】

(단위: 건, %)

계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깔림		부딪힘		직업성 질병		무너짐		폭발		베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34	12	35.3	8	23.5	5	14.7	2	5.9	2	5.9	2	5.9	1	2.9	1	2.9	1	2.9

- “떨어짐 사고” 12건 모두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였고,
- “끼임 사고” 8건은 근로자의 신체가 끼일 위험이 있는 설비에 근로자의 접근을 제어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가동 중인 설비를 정지하는 절차 없이 임의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발생하였으며,
- “물체에 맞음” 사고 중 4건은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불안정한 방법으로 작업하다 발생하였고,
- 나머지 9건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확인함

- **(위반조항별)** 34건의 송치사건 중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시행령 제4조제3호) 위반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가장 많이 차지함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미이행(시행령 제4조제5호) 20건(15.9%),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 미이행(시행령 제4조제8호) 17건(13.5%)으로 시행령 제4조 제3호·제5호·제8호 규정 위반이 전체의 51.6%를 차지함

【주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내용】

(단위: 건, %)

구분	계	시행령 제4조									시행령 제5조 제1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위반건수*	126	12	4	28	15	20	5	14	17	9	2
백분율(%)	100.0	9.5	3.2	22.2	11.9	15.9	4.0	11.1	13.5	7.1	1.6

* 하나의 사안에 대해 위반조항이 2개 이상 중복된 경우가 있어 송치 건수와 규정 위반 건수가 일치하지 아니함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현황 및 과제

전형배(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왜 이 법률을 만들었나?

-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하면 결국 처벌되는 사람은 월급쟁이 중간 관리자이거나 높이 올라가면 가끔 이사급 공장장 정도가 처벌되는 현상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 특히, 건설업 사망사고 경우 현장소장이라는 확고한 중간관리자가 사고의 책임을 모두 떠안는 수사과 재판 관행이 성립되면서 건설사의 경우 제조업의 공장장 수준의 관리자 처벌도 어렵게 되었다.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데도 건설사 사장님은 처벌되지 않는다.
- 고로 사장님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경영을 촉구하고자 했다. 법령의 내용인 범죄의 구성요건도 관리자가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경영에 관한 것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영국의 기업중과실치사법을 소개하며 상한 없는 법정형 벌금을 소개하는데, 이는 사실 자체로는 맞지만, 실제 법 운용 체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개이다. 영국은 산안법의 처벌 조항도 상한이 없는 벌금형이고, 특히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산안법으로 하고 있다. 즉, 산안법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이미 실현하고 있다. 실제로 1년에 약 200건 정도 발생하는 사망사고 중 약 2건 정도만 기업중과실치사법을 적용하여 기소한다. 영국 기업중과실치사법은 양형기준상 기업에 대하여 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영국의 사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운용에 관한 시사점을 찾으려면 영국 산안법의 운영 체계를 고려하여야 하지 기업중과실치사법을 고려하면 안 된다. 영국의 기업중과실치사법에만 집중하면 영국의 산재예방과 처벌 체계 전체 모양을 간과하고 오해에 기초한 주장(예를 들어, 영국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기소 건수를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는 등)을 할 수 있다.

2. 법률을 만들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가. 경영계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 경영계는 설문조사, 성명서,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의사표시만을 집단으로 반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를 기초로 하여 기업의 사정에 맞추어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설계하여 시행하되 이것을 중간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보건경영체계는 기업의 규모와 비즈니스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 법령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에도 경영계와 기업은 끊임없이 의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제도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000명이 일하는 기업, 100명이 일하는 기업, 그리고 30명이 일하는 기업마다 각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각 기업이 성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와 내용을 갖춘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각 기업이 적극적으로 설계하여 운용하라고 요구하는 법률이다.
- 법문 자체가 명확히 않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법률이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기초로 하므로 기업이 책임을 지고 위험성평가를 하여 거기에서 도출된 관리체계를 시행할 터이니 시행령이나 이에 기초한 정부의 설명 자료 등에서 그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화하고 무조건 그대로 지키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주장해야 한다.

나. 노동계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목소릴 높이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법정형의 하한을 신설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유형의 개정안은 “처벌 강화 = 산재예방”이라는 철학에 기반한 것이다. 법정형의 하한을 신설하는 이유는 상한을 높여보았자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할 것이라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다. 그 불신이 근거가 있다면 설령 하한형을 입법하더라도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하거나, 하한형에서 감경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낮은 선고형을 계속 지향할 수 있다. 법정형 규정도 그렇지만 타 범죄의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살펴봐도 법관의 양형 재량의 폭은 매우 넓다. 게다가 양형기준은 법관을 구속하는 기준이 아니다. 양형기준에 어느 정도 벗어난 형량을 선고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해당 판결을 파기하지도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법관의 권력은 유죄 인정에서 먼저 발현되지만, 대부분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는 실무에서 법관 권력의 핵심은 양형결정권이다.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선거범죄의 사례를 헤아려보면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얼마나 위력이 강한지 알 것이다.

기업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를 게을리하거나 오히려 법령 위반을 방조하는 등의 구조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관하여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재판

철학을 수궁하지 않는 한, 법 기술적으로 법관의 양형 재량을 제한하여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벌할 수 있다는 논리는 우리 규범 구조, 재판 실무, 산안 범죄에 대한 법관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실현하기 어렵다.

다. 수사의 진척 속도는 매우 느려 처벌되는 경영책임자가 아직 한 명도 없다.

- 법률의 원래 의도대로라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형사재판을 통해 경영책임자가 엄하게 벌해지는 상황을 눈과 귀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수사와 재판 모두 매우 느리게 진행되면서 시행 1년이 되어가도록 처벌받는 경영책임자가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 고로 이 법률을 너무 겁내지 말고, 안전 보전에 관해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좀 지켜보자는 신호를 기업에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실행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책임자가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었는데 제1호 사건조차도 언제 판결이 선고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수사와 재판의 속도가 이토록 느리면 아무도 더는 이 법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큰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출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향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더더욱 종전과 질적으로 다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이유는 없다. 사망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비용이나 부담할 리스크가 종전과 같은데 영리사단법인인 기업이 굳이 새로운 비용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이처럼 실제로 선고되고 집행되는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서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 성공 열쇠를 법관에 사실상 일임하는 정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만 보면 법원은 산안 범죄에 대하여 엄벌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다. 산안법 제정 이후 약 40년을 그러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도 엄벌이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이 현실이다.

라. 현장에서 안전보건 감독을 하여야 할 감독관이 조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 안전보건 경영상의 잘못을 찾아내어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수사내용에 감독관은 아직 익숙하지 않고, 무엇보다 사망사고 발생 시 무엇을 어느 정도의 증거가 이루어져야 공소가 유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나치게 많은 참고인 조사 등 수사의 양이 운용 가능한 인력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을 넘어서려 한다.

마. 변호사 업계는 대기업 사장님들을 겁을 먹게 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큰돈을 챙겼다.

- 컨설팅 결과 대기업에는 안전보건최고경영자라는 (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 대신 형사책임을 떠맡는) 이상한 직책이 만들어지고, 일부 최고경영자들에게 현장의 안전보건에 더욱 관심을 두지 않아야 본인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었다.

만일, 재판 결과마저 이렇게 잘못된 컨설팅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앞으로의 컨설팅은 더더욱 최고경영자의 무관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런 선례가 판례를 통하여 만들어질 징조가 보인다면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경영책임자 이외에 “이에 준하는 자”를 경영책임자로 보는 법률을 개정하여 “이에 준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3. 이 법률이 작동하려면 무엇을 하여야 할까?

가. 경영계, 산업계는 이 법률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

- 경영계, 산업계는 이 법 시행 이후 법 집행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소극적 내용의 설문 조사나 주장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
- 법률을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 단위에서 작동 가능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기업은, 경영계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산재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종합적인 플랜을 정부나 노동계에 제시한 바가 없다. 대부분 늘 단편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관철하려는 협상에 시간을 보냈다.

위험성평가를 기초로 하는 자율안전관리체계에는 기업의 규모와 체계 운영의 수용가능성도 고려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운용 가능한 자율안전관리체계의 모델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기업 규모와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자율안전관리체계는 영세 기업에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의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를 요구한다. 결코 대단한 조직 개편이나 첨단 기법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화학 약품을 제발 라벨 표시가 없는 빈 투명 페트병에 마구 소분해서 쓰지 말 것, 화재 염려가 있는 전기 배전반 등은 먼지가 쌓이지 않게 커버를 씌울 것, 추락할 염려가 있는 곳은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잘 보이게 형광페인트 등으로 테두리를 표시할 것, 차량과 작업자의 동선이 섞여 교통사고 나지 않게 구분하는 선을 만들어 놓을 것, 독한 냄새나면 무조건

환기를 할 것, 안전보건교육은 그 회사에서 있었거나 있을 수 있는 사고, 아차사고나 질병 등을 내용으로 하여 실행할 것 등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시스템 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소기업장 적용 범위에 관한 논란은 자율규제와 위험성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바가 크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그리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 노동계가 원하는 엄벌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법조 시스템에서 성취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정형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낮은 법정형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도 법정형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한다. 수사와 재판 현실을 받아들이고 경영책임자의 법정형 수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인정하고, 대신 뒤에서 보는 것처럼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죄의 신설을 제안하여야 한다.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상습, 반복, 다수 사망사고에 형사처벌을 확행한다고 기술 → 이것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변경되는 것이어서 법률 개정사항인데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 입법이 아니고 입법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으로 입법을 한 것이어서 지금도 다수당이 민주당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로드맵을 고려한다면 사망사고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산안법에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산안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중 상습, 반복, 다수 사망사고에 대하여 경영책임자와 범인을 가중처벌하는 개정을 고려하는 것이 입법 체계에 맞다.

다. 검찰은 유무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기소를 하여야 한다.

- 지속적인 경영책임자의 고의 증명을 감독관에게 요구하며 수사 보완을 지휘하는 것은 법률 작동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만 가져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유무죄 인정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다. 검찰이 사건을 계속 붙잡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소하여 법원의 판례 축적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무죄 판결이 여럿 선고되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유죄의 인정요건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속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기소를 하여야 한다.

- 판결서를 쓰는 법원은 유죄와 무죄 판결서 모두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하고, 유죄 인정 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형량을 선고하여야 한다.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위험성평가의 적정한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처벌요건 명확화 → 시행령 구성요건의 개수를 줄이겠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시행령의 구성요건은 명확성이 문제가 아니다.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지향하는 입법임을 고려하면 지금의 시행령 입법은 오히려 지나치게 경영사항에 간섭하는 입법이다. 전담 조직이나 겸직 허용 여부와 기준 모두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예방 감독과 사망사고 발생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그 결정한 수준이 미흡하다고 밝혀지면 경영책임자는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 굳이 개정을 고려한다면 총 9+4개로 구성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개수를 줄이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런데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개수를 줄이면 그만큼 기업의 책임이 높아진다.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책임이 기업에게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 자율규제의 특성상, 법령에 의무의 개수나 내용을 적게 규정하면 할수록 개정 후 남는 나머지 의무는 더욱 일반적, 추상적 의무로 입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확실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 사건 폭증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과감하게 경찰로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 지난 중대재해처벌법 1년간의 경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수십 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절차는 매우 느리고 그 제재의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 충분하지 않은 감독 인력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장기 수사에 매몰되면 현장 감독은 소홀하여지고 사망사고는 줄지 않는다. 오히려 늘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나치게 많은 참고인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행 수사지휘 방식을 재고하고 적정 수사, 신속 기소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산안법을 개정하여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를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산안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가중된 구성요건의 범죄로 변경하고 그 수사권은 경찰에게 넘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영국도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산안법 수사를 감독관이 하고, 기업중과실치사법 수사는 경찰이 한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대상을 종사자로 하고 있고, 종사자의 범위는 수급인, 하청 소속 종사자도 포함하고 있다. “동일 사업장 동일 규제”라는 규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서 대대적으로 구조 변경을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종사자로 대폭 확대하여야 하고 감독대상도 그에 맞추어야 한다. 서구에서 산안법의 보호대상을 employee에서 worker로 확대하고 있는 경향과 일치한다.
-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대상도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아니고 종사자로 확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선별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식의 조문도 삭제하여야 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어떤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지도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게 된다.
- 노무를 제공받는 계약 형식을 묻지 말고, 제공하는 노무에 내용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가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산안 법령 체계 내 원하청 기업 간 역할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제시하겠다는 방안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설혹 법령으로 이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도급 관계에서 실효성은 매우 떨어질 것이고, 오히려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의무 배분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정부는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절차를 지원하고, 배분된 의무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안전보건경영 자체에 대한 강제 감독이 가능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유형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죄를 신설하여야 한다. 사망사건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만 뒤늦게 이를 처벌하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지 감독하고 문제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시키는 예방 수단이 강력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죄를 신설하면 기본범죄를 처벌하고 사망의 가중된 결과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법리에도 들어맞으므로(결과적 가중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범죄 자체의 성격을 두고 벌어지는 복잡한 분석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경영책임자 이외에 “이에 준하는 자”라고 규정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법률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자기 모순적 규정이다.

4. 사망사고를 줄이고 싶다면 감독관을 현장에 보내어 위험 작업, 유해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사람이 죽기 전에 작업을 중지시켜야지 죽은 다음에 사고 조사를 위해 작업을 중지시킨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다. 그렇게 사고 조사해도 또 비슷한 형태로 사람이 죽는 것을 얼마나 많이 목격하였는가 생각해보자.
- 기계가 위험한지 아닌지, 작업이 위험한지 아닌지는 감독관이 현장을 가 보아야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가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죽지 않는다. 상당수의 죽음이 그냥 떨어져서 죽고, 기계에 끼어서 죽는 것이다.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안전보건조치가 되지 않아서 죽는 것이고 이것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사고사망재해를 줄인다.
- 1972년 로벤스 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1974년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중점을 두고 개혁한 것은 장기근속에 기초한 감독관 조직의 집중화, 효율화, 그리고 작업 중지를 바탕으로 한 권한의 강화, 재량의 두터운 인정이다.
- 사업주,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 이행 수단은 일관된 태도를 수십 년간 유지하면서 작업 중지와 개선처분에 기초한 감독관의 현장 감독이었다. 기업에 대한 상한의 제한이 없는 벌금형 법정형 도입은 최근의 일이고 여전히 이 수단은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산안법 개정을 통해서 사전 예방 목적의 한시 작업중지 예외적 실시 근거 마련 →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산안법상 시정조치를 폭넓게 해석하고 행사하면 사전 예방적 행정처분으로서 작업중지명령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감독관 조직과 행정처분이 사고사망재해를 막는데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오려면 한 번 감독관은 퇴직 시까지 감독관으로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순환보직에 기초한 제네럴리스트를 지향하는 공무원 인사조직은 유능한 감독관 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랜 경험과 충분한 지식을 전제로 한 전문 감독관의 권위가 사업주와 중간 관리자들의 감독 처분 승복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정부 조직 체계와 공무원 인사제도를 고려하면, 결국은 예산과 인사권이 독립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감독관 역량 강화 -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 운영을 제시하나 미약하다. 현행 순환보직 유지를 전제로 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다.

- 감독관의 적극적 행정처분(사전적 작업중지명령, 시정조치 등)을 독려하고, 감독관의 활동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위험성평가에 기초한 자율규제는 감독관의 폭넓은 재량 행사를 전제한다. 재량 행사에는 종전보다 많은 법적 다툼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사법 분쟁이나 민원의 형태로 제기되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예를 들어, 작업중지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고 해당 감독관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 소신껏 재량을 행사한 감독관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재량 행사에 따른 개별 분쟁의 해결을 감독관에게 떠넘기면 현장의 감독관은 적극적으로 일할 이유가 없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정부가 감독관을 보호하는 일관된 태도와 이를 일선에서 지지하는 청장과 지청장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

김 성 룡*

I. 시작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줄임)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언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주장도 보이지만,¹⁾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영활동에 부정적이라는 응답(41.0%)보다 긍정적이라는 응답(47.0%)과 영향이 없다는 응답(12.0%)이 더 많이 했다는 설문결과도 등장하고 있고,²⁾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강조하는 진단이 있는가 하면, 대형 로펌과 컨설팅기관만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목소리도 강하다.³⁾

현재까지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범위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갈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일부 업체의 대표들은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고, 적용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오히려 증가했고, 사업장에서는 서류작업이 대폭증가하고 있다는 등 문제점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지만,⁴⁾ 다른 한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은 CEO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고, 대표이사를 보호하기 위해 CSO를 내세우는 경우 CSO가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고, 위험성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는 보고서가 출간되어 경영자단체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고도 한다.⁵⁾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1) 위키리크스 한국, “[건설 INSID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건설업계 “처벌 완화해달라” 호소”, 2023.1.17.자 기사 (<https://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33826> : 2023.1.17. 최종 검색)
- 2) 5인에서 299인 사업장에서는 긍정이 29.5%, 부정적 의견이 61.7%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2022.12.) 참조.
- 3) 중소기업뉴스 칼럼,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로 놔둘 것인가”, 2022.10.31.자 (<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69> : 2023.1.17. 최종 검색)
- 4) 엔지니어링데일리,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정부 기대와 달랐다”... 정책 효과 물음표”, 2023.1.10.자 기사 (<https://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15> : 2023.1.17. 최종 검색)
- 5)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수사·처벌 늘었다””, 2023.1.12. 자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2_0002156489 : 2023.1.17. 최종 검색); 전자신문,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단계별 예방 및 제도개선 필요””, 2023.1.13.자 기사(<https://www.etnews.com/20230112000120> : 2023.1.17. 최종 검색)

법령의 개선을 주장하는 입장,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원사의 80.3%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고, 세부적으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수준 완화(20.4%) 순이었다고 한다.⁶⁾ 또한 2024년부터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다고 자평하는 전기공사업체에서는 회원들의 모임인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업체 대표 보증·금융기관인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업계 유관기관들의 준비 및 대응이 빨라지는 분위기라는 기사도 있지만⁷⁾,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93.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기사도 있다.⁸⁾

피상적이지만, 이러한 보도들을 일견하면, 법률 시행 1주년이 된 현 시점에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3.1.5. 현재 전 업종 사망사고 발생 수는 전년도 대비 54건이 감소하였고 사망자수도 총 644명으로 전년 대비 39명이 감소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사망자수는 오히려 8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한편 2022년 발생한 사고 중 총 229건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34건이며, 현재에도 근로감독관의 수사진행 중인 사건이 177건이라고 한다. 현재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11건으로 알려져 있다. 약 4만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난 1년의 수사와 기소 현황을 참작하면, 법령과 제도의 변경 없이 현재의 상태에서, 2024년부터 초부터 약 66만개의 사업장이 추가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는 명약관하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해 11월 30일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고, 지난 1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다음날인 1월 12일 산업재해예방 TF를 출범하며 맞불을 댔다고 하고,⁹⁾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¹⁰⁾

2023년도 종래와 같은 관점의 차이가 부딪히는 모습이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지만, 향후의 논의와 판단의 중요한 외적 요인의 하나는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6)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 중기 77% “대응여력 없다””, 2022.12.22.자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mnSeq=207&seq=153494> : 2023.1.17. 최종 검색)

7) 전기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2024년부터 50인 미만 전 사업장 확대...전기 공사업체 ‘바쁘다 바빠’”, 2023.1.13.자 기사(2023.1.17. 최종 검색)

8) 전기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중소기업 77%는 ‘대응여력 없어’”, 2022.12.27. 자 기사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493> : 2023.1.17. 최종 검색)

9) 대한경제,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CEO 과잉 처벌...올해 개선되나’”, 2023.1.17. 자 기사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1161057084870782 : 2023.1.18. 최종 검색).

10) 한겨레, “중대재해 줄이자면서 중소기업장 법 적용은 또 연기?”, 2023.1.11.자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5313.html> : 2023.1.18. 최종 검색)

치사상죄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라는 형사절차의 현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입법자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행 제도와 재원의 설계와 운영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수정은 법률의 제정만큼 중요한 것이고, 동일한 목적 달성이라면 저비용의 수단과 방법을 택하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무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판단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인 것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과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운영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외적 자료를 제공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II. 몇 가지 현황

1. 사건 수, 수사 기간 등

법률 시행 약 1년 기간 동안 230여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중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 약 180여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결정이 된 사건이 총 11건이다.¹¹⁾ 송치하기까지 수사에 소요된 기간은 건당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수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은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건 중 수사절차에서 내사 종결된 경우는 약 20여건으로 그 사유는 대체로 혐의자의 중대산업재해 예견가능성 부재, 재해자의 자살추정, 재해자의 개인지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제외 사건, 사업장내 교통사고 등이었다고 한다.

2. 전담부서 신설, 대검찰청 등과의 협조 강화 등

고용노동부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7개 지역의 대표(지)청에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신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 수사하도록 하여 사건의 충실하고 신속·전문적인 수사와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부터 현재까지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이론·실무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대재해 상시모니터링 및 중앙청 차원의 수사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대검찰청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강화하여 발생현황을 공유하고,

11) 그 중 언론에 널리 알려진 대흥알앤티 사건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기소의견에 대해 검찰에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린 유일한 사건으로 보인다.

법리적 판단에 대한 수사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률자문관(검사)을 고용노동부에 파견하여 검찰과 특별사법경찰관 사이의 밀접한 의사소통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있다.¹²⁾

특히 평소 관할 사업과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지도와 조언을 담당하기도 하는 근로감독관의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안의 실제 분석과 판단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지휘와 기소여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의 성공여부는 근로감독관과 검찰의 유기적 협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3. 지난 1년간 수사 관련 현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광범위한 수사 범위, 난이도 높은 수사, 대규모 인력 투입 필요성, 장기의 수사기간, 대형 로펌을 포함한 변호인의 수사 초기 개입으로 인한 다양한 임의·강제수사 등의 제약이나 조사기간의 지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4시간 대기조로 불리는 거대 로펌은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압수수색을 피하는 법, 진술을 거부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사 대응방법을 경영책임자들에게 교육함으로써, 피의자의 강한 혐의부인이나 증거인멸 시도 등을 더욱 자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결국 그로 인해 압수수색등 강제수사의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수사 기간은 더욱 장기화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자문이나 대리인으로서 변호인들이 사전에 (잠재적)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 진술거부 등 수사 대응방법을 교육하고 서류작업의 내용과 방법 등을 알려 줌으로써 수사과정의 피의자 측의 비협조적·방어적 대응도, 물론 당연한 피의자의 권리이자 방어 방법이지만,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과도한 두려움과 형사법적 대응에 집중하는 현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감독관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게 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행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양한 (작위)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체계 전반을 확인해야만 한다. 그러한 수사의 범위는 사업·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양할 것이고, 특히 사업·사업장의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수사기관은 엄청난 수사범위라는 현실적 문제를 극복해야하는 힘든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12) 한겨레, “한동훈 법무부, 노동부에 첫 검사 파견...중대재해법 영향은?”, 2022.7.4. 자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9580.html> : 2023.1.18. 최종 검색)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치사상죄는 마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모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을 중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려는 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퍼지게 되자, 거대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있는 것도 문제도 지적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의 경우와 달리 이제는 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형사처벌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생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생각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의 특성상 종래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범위보다는 확대된 사건 관계인과 자료 조사의 부담은 물론이고, 사고 현장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절차와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 원인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어떤 특성 때문인지, 이 범죄의 수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Ⅲ. 산업재해치사상죄의 특징과 관련 수사의 특징

1. 범죄의 기본 구조에 따른 수사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이른바 산업재해치사상죄는 제1항에서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여, 동법 제4조와 제5조의 위반을 확인하는 것을 수사의 필수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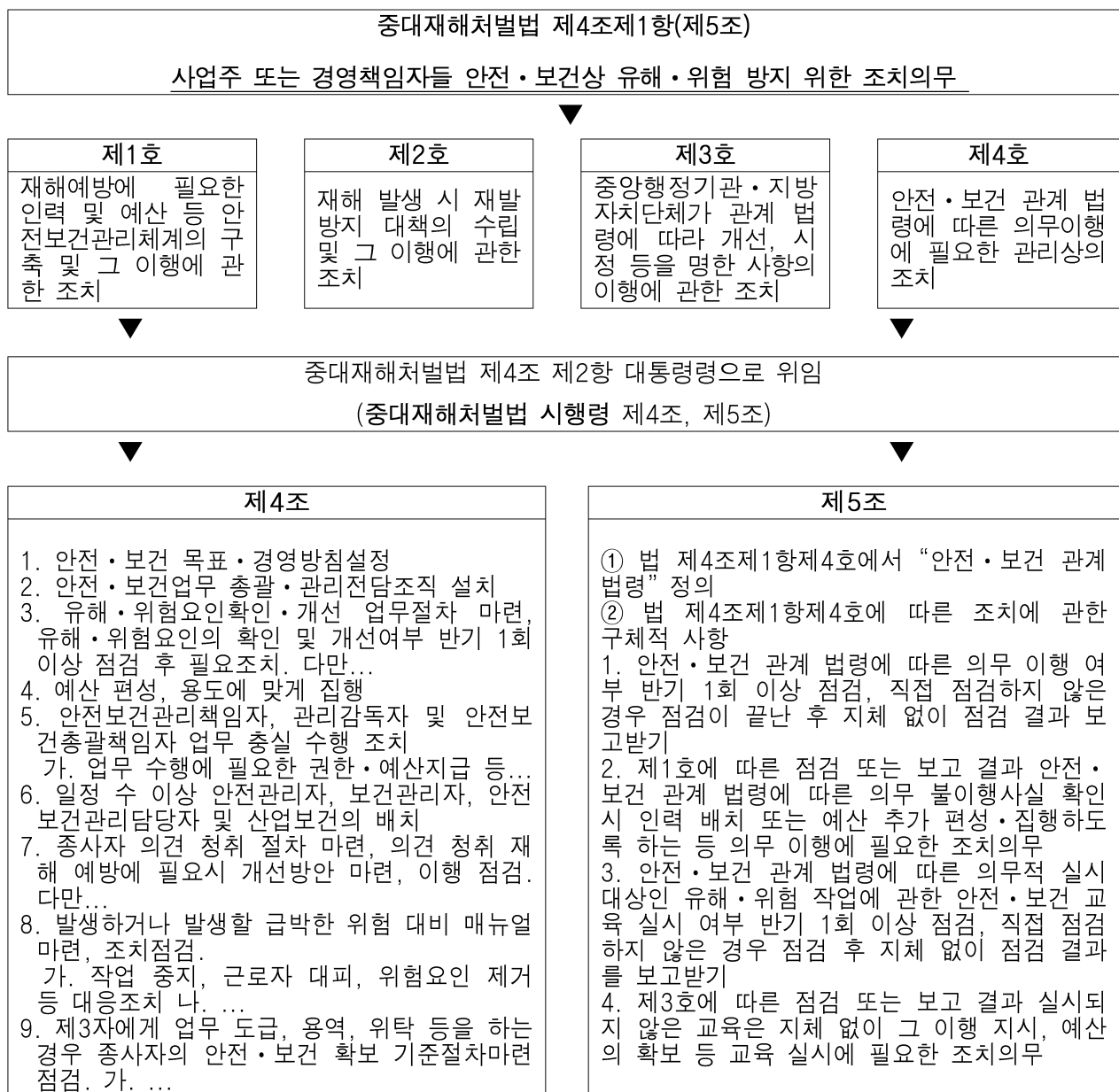
나아가 이러한 의무위반이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규정한 중대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었는지 그 인과적 관련성어도 수사에서 밝혀야할 요소로 정하고 있다.

즉,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중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라는 요건도 동시에 충족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산업재해치사죄) 또는 제2항(산업재해치상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이를 수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는 아래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무위반이 원인이 되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법의 의무를 구체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작위)의무의 이행여부가 수사의 출발점이자 핵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작위의무의 내용]



이러한 의무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의무위반이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한 인과적 원인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의 중요 과제로 등장한다. 달리 말해 비록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불이행하였지만, 설령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사자의 사망 또는 상해라는 중대산업재해발생을 막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은 부정되는 것이다.

즉, 사업장에서 발생한 종사자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의무 위반치사죄(동법 제167조)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죄(동법 제6조 제1항)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의 수사에 국한될 것이다. 결과발생이 없는 의무위반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확인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과 그 위반이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인과성 확인이 행해질 것이다. 이제 해당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성립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여기서는 이른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의무와 달리 그 보다 상위의 또는 그 보다는 사고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약한 의무라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된다. 달리 말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위에서 소개한 의무들)의 불이행과 중대산업재해 간의 인과성을 확인해야만 한다. 통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매개된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위반과 결과, 그리고 그 인과적 관련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인과적 구조 및 인과성 심사 절차와 방법]

- ① 사업주 등의 의무 불이행(의무위반/부작위)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 중대산업재해(사상) 발생¹³⁾
- ▶ 만약 사업주 등의 의무위반이 없었더라면(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불이행은 없었을 것이다. (1단계)
 - ▶ 만약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불이행이 없었더라면(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중대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2단계)¹⁴⁾

1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매개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의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중대산업재해와의 직접적인 인과성 판단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므로 생략한다.

14) 이러한 인과관계의 준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은 조건공식을 활용하여 결과에서 원인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상의 결과가 탈락하지 않고는 산안법상의 작위의무의 이행은 첨가되지 않는다.” 또는 “산안법상의 작위

위와 같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불이행, 그 의무불이행이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었다는 인과성 확정이 수사의 핵심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재해치사상죄의 범죄성립요건]¹⁵⁾

산업재해치사상죄(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범죄 성립 요건	구성 요건	객관 적	<u>①행위주체</u> <u>②구성요건적 상황</u> <u>③작위의무(=안전보건확보의무)</u> <u>④(일반적·구체적) 행위가능성</u> <u>⑤부작위(=의무불이행)</u> <u>⑥결과발생(=산업재해치사, 산업재해치상발생)</u> <u>⑦인과관계(인과성)(부작위의 인과성, 상당인과관계설)</u>
		주관 적	<u>⑧기본행위(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u> <u>⑨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인식있는·없는) 과실}</u> <u>[⑩의무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의 인과성에 대한 예견가능성]</u>
	위법성		형법 제20조-제24조의 정당화사유
	책임		1. 책임능력 2. 위법성의 인식(법률·금지인식) - 금지착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3.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과잉피난 등)

산업재해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범죄성립요건, 특히 굵은 고딕체로 강조한 요건들에 대한 충실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반박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송치와 기소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의무가 이행되었더라면 (가설적 첨가절차) 사상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방지)의 형태로 심사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1단계의 심사가 행해진 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적 판단이 행해지는 것이다.

- 15)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①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라는 신분·지위, ②구성요건적 상황, ③작위의무(안전보건확보의무), ④일반적·구체적 행위가능성, ⑤의무위반·불이행(부작위), ⑥결과발생(중대산업재해발생), ⑦부작위의 인과성(상당인과관계)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주관적 구성요건(⑧)으로는 ①, ②, ③, ④, ⑤에 대해서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⑥의 결과발생에 대해서는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이 입증(⑨)되어야만 하고 ⑦의 인과관계, 즉 자신의 의무이행이 있었다면 결과가 방지되었을 것임에 대해서는 그 대략적인·본질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예견·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이 있었다는 것(⑩)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과성에 대한 인식은 결과발생 가능성을 예견가능했다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수사의 특징

이러한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증명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인 만큼, 동 범죄에 대한 수사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범죄 성립요소의 증명에 어떤 증거가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를 수집·확보할 수 있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1) 행위주체

우선 행위주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증명을 위해서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확보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이나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인사, 조직, 관리, 안전, 보건, 운영 등 사업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실질적 운영이 누구의 의사결정에 의해 집행되는지에 관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령 수사시점에는 다툼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소와 공판단계에서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충실한 자료 확보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행위주체의 확정을 위해서도 해당 기업의 경영자료나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수사를 넘어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행위주체가 1인인지, 2인 이상인지, 흔히 바지사장과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할 착안점이 보이는 경우는 더욱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대상·방법이 확대되는 복잡해지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2) 구성요건적 상황

의무범, 부작위범이라는 특성상 피의자의 의무위반이 행해지기 전 사업·사업장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유무죄는 물론 형량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고 사업장의 사고 이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할수록 수사의 성공확률도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사업장의 기존의 의무위반 사실이나 횡수, 그 중요성과 상습성, 그에 대한 개선노력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인 수사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의 조사와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물적 증거는 물론 인적 증거의 확보도 중요하며, 수사과 재판 단계를 거쳐 가면서 진술번복과 같은 사정에 대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3) 작위의무

작위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동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특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를 법령에서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에서는 시행령이 법률에서의 의무를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법률의 적용범위를 입법자의 의사에 반해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 나열된 개별 의무들을 모두 이행하는 것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의 의무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두드러진 의무위반만이 아니라 모든 의무위반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어떤 특정 개별 의무위반이 바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의 작위의무의 불충실한 이행이 누적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모든 의무의 위반 여부와 정도를 충실하게 조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수사기관의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여부와 정도에 대한 충실한 조사는 향후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확보체계의 개선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차원에서의 순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이다.

4)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사과정에서는 전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무를 이행하는 외형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질이 그렇지 않은 경우,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법령이 요구하는 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부작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법령상의 작위의무 중 어느 하나의 부작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의무의 이행정도를 충실히 확인하는 것이 범죄의 특성에 부합하는 수사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조사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의 의무위반들은 한 건도 동일한 경우가 없을 것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의무, 동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무가 안전보건체계의 확립과 중대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또는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인 것이다.

5) 인과관계

법령에서 나열된 의무의 이행여부를 심사하는 것, 실질적으로 충실한 의무의 이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결국 불이행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결과발생의

방지가 가능했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확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양한 의무의 불이행, 불충실한 이행이 누적되어 안전보건확보체계의 불완전성을 낳고 그런 상황하의 사업장에서 야기된 사고가 결국 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요체이므로, 인과성 판단의 입력부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확인되었는가에 따라 인과성 판단 작업의 난이도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산업재해치사상죄는 부작위범의 인과성 판단이라는 점에서 작위범의 인과성 판단과는 다른 형태의 가설적 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판사로 하여금 ‘위반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사상의 결과가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면서 과연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유죄가 선고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산업재해치사상죄가 사소한 의무위반만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형사처벌하려는 적(대)형법은 아니라는 말이다.

결국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의무위반의 내용을 충실히 조사하고, 위반한 의무들이 모두 충실히,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확실성에 가까운 개연성으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6)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가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위반을 고의범에 국한하고 있다고 전제하면, 적어도 피의자가 미필적 고의로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즉 미필적 고의의 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들이지만, 그중 특히 작위의무에 대한 고의가 입증의 중요 대상이 될 것이다.

여기서 고의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작위했다는 것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간접·정황증거를 통해 내심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여기서도 결국 수사관은 피의자가 자신의 사업·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으면서도 이를 부작위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간접증거를 수집해야만 하는 것이다.

구체적·특정 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사업(장)과 동일·유사한 사업(장)을 경영하는 평균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장과 가장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을 기준으로 당해 피의자의 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필히 거쳐야 할 것이다. 판사의 판단을 쉽게

해주기위해서도 해당 사업장과 유사한, 즉 해당 사업분야에서 평균적인 수준의 의무 이행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7) 중한 결과·의무위반과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성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

중사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불이행이 그러한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과성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피의자 스스로 예견 또는 예견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과 무관하게 객관적 제3자, 그 사업분야의 평균적 사업주의 입장에서 예견가능하였을 것인가라는 기준으로 접근하여, 가능한 정황증거들을 충실히 수집하는 방대한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즉, 이러한 예견가능성을 쉽게 인정하는 피의자는 오히려 예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앞서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도 주관적 요건에 대한 수사과 증명은 평균적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을 기준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3. 소결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상죄, 특히 산업재해치사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죄와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와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도 개시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종래보다 사건 수만으로도 2배 이상의 부담이 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치사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유형이므로 새로운 형사처벌규정이 도입된 분야로 볼 수 있고, 이점을 감안하면 근로감독관의 사건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산업재해치사상죄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작위범이 아닌 부작위범, 그리고 단순한 의무위반범이 아니라 중한 결과발생을 요구하는 결과(침해)범이라는 점에서 예를 들어 작위의 상해, 살인사건과는 다른 특징이 있고, 결국 광범위한 정황증거·간접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사업(장) 마다의 특성에 따라 고유한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그 특정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체계확립에 필요한 구체적 의무들은 무엇인지, 동종·유사 사업장의 평균적 인식·의무이행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이행노력을 보이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하는 등, 쉽게 말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범죄수사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맺으며

1. 개관

건설산업기본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화학물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이미 다양한 국내 법률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치사상죄와 같은 범죄와 유사한 형태를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죄를 사실상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이상한 법률이라거나 추상적이어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부작위범의 특성을 감안할 때, 상황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하는 특징이 반영되면 법령상의 의무는 당연히 다소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언급한 위 법률들에서는 형벌의 상한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인 경우도 있으며, 의무위반(부작위)이 고의이고 사상의 결과가 과실인 경우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 달리 말해 판사의 법률해석으로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고,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는 규범적 요구도 해당 규범이 적용되는 영역의 구체적 사정과 특성, 행위자의 식견과 능력, 직업의 특수성 등이 반영되어 보다 구체적인 의무가 객관적·평균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면 이를 두고 단순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법적용을 위한 실무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연 법률의 선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없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경영자, 노동자, 국민일반 모두의 이익을 가장 최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일 것이다.

여기서는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중대재해발생시 내사, 입건, 수사, 기소 등의 과정을 관찰할 때, 동죄가 가지는 어떤 특성이 수사에서의 어떤 특징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주마간산으로 살펴보았다.

2. 근로감독관의 수와 업무부담 해소 필요성

현재 산업현장의 기업을 관리하는 전국의 근로감독관은 741여명이라고 한다.¹⁶⁾ 1인당 2896.3곳의 기업을 담당한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16) 대구 MBC, “[들어보니] 처벌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 빅병커”, 2022.12.29. 자 기사 (<https://dgmbc.com/article/E81aGHtymc> : 2023.1.18. 최종검색); 경향신문, “근로감독관 ‘내 코가 석자’...1명이 사업장 2896곳 담당”, 2022.3.20. 자 기사(<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202133005#c2b> : 2023.1.18. 최종 검색)

감독관 전국에 100명 배치했다고 한다.¹⁷⁾ 인력의 부족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의 부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단순한 인력보강이나 수사인원의 보충으로 즉시 해결될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하다.

3. 이중수사 방지를 위한 경찰과의 관할문제 해소 필요성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수사 외에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수사 관할을 행사해왔다. 물론 당시에는 검사의 지휘대상이었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당해 사건 전체를 지휘·판단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검사의 지휘없이 유죄로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검사, 동일 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향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는 검사의 지휘 하에 근로감독관의 수사대상으로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종래 산업안전보건법에 형사처벌규정이 없는 시절의 근로자의 사망사건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수사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위반과 관련성이 없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수사 필요성이 경찰의 수사를 정당화하는 근거였으나,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종사자의 사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도입되어 있고, 근로감독관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수사할 능력이나 관할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의 관할 중복이 결국은 피의자에 대한 이중의 수사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과연 지속될 필요가 있는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⁸⁾

4. 범죄특성에 따른 수사특성의 고려

산업재해치사상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법에 정해진 의무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나, 특정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과실에 기인한 직접적 사상의 결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같은 범죄의 수사와는 달리, 광범위한 인적·물적 수사대상을 충실하게 조사하지 않는 이상 기소여부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달리 말해 피의자의 기소와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근로감독관의 수사과 검사의 최종 기소여부결정이 불가피해 보이고, 법원의 (불구속 상태의) 심리까지 포함

17)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감독관 전국에 100명 배치, 7개 지방노동관서에 중대재해관리과 설치...수사 절차 표준화, 현장감독 강화”, 2022.1.11. 자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74> : 2023.1.18. 최종 검색)

18) 사안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단독관할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으로는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2022), 308쪽-309쪽 참조

한다면 2022년 1월 말에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가 2023년 하반기에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워 보인다.

형사사법의 기본원칙들이 작용하는 한 임의적으로 범죄성립의 요건을 완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피의·피고사실의 범위를 축소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선고형의 상한은 점점 하방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한다면, 결국 수년에 걸친 수사과 기소, 재판이 말 그대로 형식적 처벌에 그치는 종이호랑이 법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한 반박이 거센 상황에서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은 2024년에 현재의 240여건의 수사가 640여건 이상으로 확대된다면 과연 제대로 된 수사과 기소가 가능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5. 검사의 기소재량의 활용 가능성과 정당성, 그 시기

검찰의 간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는 소개 글이 경영계나 그 대리인 변호인들의 주장이 실린 글을 장식하고 있다.¹⁹⁾ 익히 알려진 대흥알앤티 사건이 불기소 결정되자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라는 규탄시위가 열렸다.²⁰⁾ 검찰의 손에 있는 칼날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의 기소재량이 문제의 해결이나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른 형사사건과 다를 바 없이 다양한 불기소 처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현장에서의 근로감독관의 수사는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여전히 송치 가능할 정도로 계속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들은 전혀 완화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정당성과 합법성을 유지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수사과 검사의 기소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내사단계부터 검찰의 수사계속여부를 결정하는 적극적 수사지휘, 즉 선택과 집중이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는 없을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6. 사건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해법에 대한 논의 필요성

검찰 내부의 양형기준, 즉 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구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검사의 기소권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유형을 (예를 들어) 검찰의 기소형량을 기준으로 구별하여 비교적 낮은 형벌의 선고를 예상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수사초기에 일종의 다이버전의 형태를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인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9) 매일경제, “[단독] 현직 부장검사 “중대재해법 위헌 소지 매우 크다””, 2022.4.11.자 기사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137555/> : 2023.1.18. 최종 검색)

20) 오마이뉴스, “국가 비웃듯 중대재해법 위헌심판 신청한 경영진...검찰 뭐하냐”, 2022.10.14.자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2284 : 2023.1.18. 선고)

2-3년을 넘는 형사절차를 통해 벌금형이나 단기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과연 이 결과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희망했던 사업장에서의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진솔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전적·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경각심을 불러올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한 형사벌을 수단으로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시도가 그 수단을 잘못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지리한 형사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형사법정에서 기업의 안전보건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하는 비판을 숙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형사절차의 특성을 고려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다 효과적 대안의 모색

통상, 형사사건은 피의자가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몇 년에 걸친 형사절차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파면이나 해임의 대상 범죄가 아닌 이상 피의자나 피고인은 일상이 직업적 삶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도 불구속 상태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면, 아직도 한건의 유죄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경우 사고발생 이후,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죄를 주장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감수하려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사고가 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의 살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사고발생이 방치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건도 있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적 요구에 부합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단계의 다수인의 과실과 의무위반이 누적되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처벌은 가능하지만 과연 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가의 관점에서 필벌성(必罰性)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함으로써 불공정의 시비를 줄이면서 형사절차내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고안하고, 형사법적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집행하는 금전·경제적 제재의 방법도 백안시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의 짧은 지면을 빌어 다하지 못한 말과 의견은 참석자 분들의 질의에 응답하면서 답하기로 하겠습니다.

토론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본부장

1. 서론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되어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경영계의 문제 지적과 우려가, 시행 1년을 맞이하는 지금 현실화되고 있음
 - 중처법은 중대재해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에서도 불구하고 과도한 형사처벌 및 예측가능성 없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음
 - 중처법 시행과 더불어 많은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확실한 의무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처벌(경영책임자 처벌로 인한 경영리스크 발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률컨설팅 등 형식적 법률준수 의무에 치중케 하는 문제점과 사업장 대응 여력을 분산시켜 오히려 산재예방에 소홀이 되는 부작용도 상당 부분 발생
- 법률의 모호성으로 인해 중처법을 집행하는 정부당국에서도 법 적용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재해발생 직후 본사 압수수색, 대표이사 입건 등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 하는 노동청이나, 기소하는 검찰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대검찰청 학술지나 법무부 연구용역('22.12.28)결과에서 중처법의 위헌성이 제기됨
 - 한편 법 시행 1년이 되었음에도 중처법 적용 대상 사업장(50인 · 50억원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법제정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 12월말 기준 중처법 적용대상 기업의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256명으로 전년 대비 8명 증가함
 - ※ 영국의 경우도 기업과실치사법 제정(2007년) 이후 사망자 감소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법률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많은 기업이 처벌될 것으로 우려됨

○ 현재 중처법 의무 미이행으로 실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대부분 중소기업 및 중소 건설현장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시 대부분 기업이 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임

※ 검찰이 기소한 11개 사업장 중 10곳이 모두 중소기업 및 소규모 건설현장임

□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묻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처벌만능주의 입법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어려운 것이 확인된 만큼, 법 적용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중처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함

○ 예방기준을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려는 작업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경영자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법이 성급히 제정되어 법의 실효성이 없음

※ 노동계에서는 사업주 처벌강화·의무 포괄화,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을 주장하나, 이는 위헌성을 더욱 부각하는 것이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임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과 문제점

□ 중처법은 처벌의 과도성에 비해 개념과 적용대상, 책임범위 등 많은 조항이 불명확함 (책임주의 원칙 및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

※ 중대산업재해(사망자, 직업성질병) 범위, 경영책임자 개념(이에 준하는 자)과 대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안전·보건 관계 법령,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등)와 원청의 책임범위(발주자와 도급인,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등이 포괄적이고 모호

○ 중처법과 하위 시행령 및 정부 해설서 모두 자의적이고 불분명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현재 중처법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된 상황임

○ 지난해 중처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다가 중단되었는데, 시행령 개정만으로 입법의 흠결을 보완할 수 없는 판단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중처법 시행이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와 같은 일부 긍정적인 기능도 있었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불명확한 의무준수 규정은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큼
- 경총 조사결과 많은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개선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영향도 있었으나, 10곳 중 6곳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또 10곳 중 8곳은 중처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22.4.20.),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22.12.22)
- 불명확하고 모호한 중처법의 제정 및 시행은, 기업에게 아무리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도 기업 존폐를 위협할 정도의 처벌과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
- 현실적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고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장 스스로 실시한 점검활동(ex. 안전보건관계법령 등) 등의 중처법 의무 이행 여부가 확실치 않아 기업마다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호소
- 이러한 상황에 불안감을 느낀 기업들은 로펌에 법률 컨설팅을 맡기고 외부기관에 안전관리를 의존하는 등 역기능도 초래
- 대기업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용을 수반한 안전관리 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의 의뢰를 실시하였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인 상황
- 중처법 시행이 안전투자 확대 등과 같이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강화된 법률이 요구하는 매뉴얼, 절차서 마련 등의 서류작업에 매몰되어 실제 현장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은 소홀해진 측면도 있음
- 안전인력 공급 등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처법이 성급히 제정·시행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전문인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안전관리자들의 이직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면서 실제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였음
- 중처법 제정 후 안전인력의 수요(대기업·공공기관 등)가 급증하여 안전관리자들의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중소 건설사와 중소기업은 안전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졌음

-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중처법 대응을 위해 대대적 인력충원을 진행하였고, 실무 경험을 갖춘 경력직을 대상으로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기존 중소·중견기업 안전인력 상당수가 이직 감행
- 중소·중견기업도 안전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지만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여 우수인재 확보가 어렵고, 대졸 신규인력이 대기업 위주로 지원하여 어려움 가중

○ 정작 산재예방을 위한 전문인력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산재취약 업종 및 사업장에 인력공백이 발생하고, 어렵게 채용한 신규인력도 안전관리 경험이 부족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

□ 중처법 시행으로 노동청의 중대재해 위반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수사과정 중 자의적 법 집행·과도한 자료요구·피의자 권리 침해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 12월 말 기준 검찰 기소의견 사건 11건을 분석해보면 재해발생일로부터 기소까지 평균 237일(약 8개월)정도 기간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음

- 재해발생일로부터 검찰에 송치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93일(약3개월), 송치 후 검찰이 해당 사건(11건)을 기소하기까지는 평균 144일(약5개월) 정도 소요

○ 수사 및 기소가 장기화되는 이유는 경영책임자 특정 및 중처법상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그리고 엄정 수사기조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수사기관 장기화로 인하여 기업들은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사업장 안전인력들이 수사대응으로 본연의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

※ 수사기관 입장에서조차 중처법의 모호성으로 법률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시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우려됨

○ 또한 수사기관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설서를 토대로 대표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고 입건 및 기소를 하는 등 자의적 법 집행을 일삼고 있음

- 12월 말 기준 중처법 위반 피의자(경영책임자)로 입건 및 기소된 대상은 모두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수사기관(노동청·검찰)은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법률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정부가 해설서를 통해 경영책임자를 특정하고 있으나 해설서는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해설서 내용 또한 불명확하여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판단하기 매우 어려움

○ 한편 노동청의 수사역량 부족으로 피의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행태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수사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노동청의 중처법 수사 감독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수사준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중처법 시행 전 법무연수원에서 수사 기초 관련 교육만 수강하였고, 감독관 3명중 1명은 경력이 1~2년의 저연차임

- 구체적으로 감독관이 변호인의 현장조사 임회를 거부하여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한 경우도 있으며, 수사와 무관한 부분까지 과도하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 중처법 수사 및 처벌에 정부 행정력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적극적 예방정책 추진과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임

○ 현재 검찰기소 11건 중 1곳(중견기업)을 제외한 10곳이 모두 중소기업 및 중소 건설 현장이었으며, 경총 조사결과*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중처법 의무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2212.22)

- 중처법 적용이 유예 중인 5인~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가능성이 매우 큼

○ 확대된 정부 조직(산업안전보건본부)은 중처법 수사에 집중되었으며, 중처법의 지원규정(제16조)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한편,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나 중처법 개선대책이 구체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로드맵의 세부내용 중 오히려 사업주 처벌·감독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

○ 지난해 11월 30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기존 규제·처벌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중처법 개정 및 자기규율 예방체제로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천명함

- 다만, 대표적인 과잉규제인 중처벌 개정방안이 구체화 되지 않고 또 국회 통과 여부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위험성평가 제도 별칙도입 등 강제화(별칙도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확대(50인→30인 이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문제
 - 특히, 중소기업과 내년부터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처벌 이행 준비가 부족하거나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도입은 사업장에 많은 부담을 가져옴
- 정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중요 수단으로 생각하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경우 현행 중처벌 및 산안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산업현장 인프라(위험성평가 모델 확산 및 실시인력 확보)구축, 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이 또 다른 규제로 머물 가능성이 큼

3. 결 론(개선방안)

- 산재감소 효과없이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중처벌은 신속히 개정되어야 함
 - 근본적으로는 중처벌의 과도한 처벌수준이나 불명확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산안법으로 단일화하여 규율하는 것이 국제기준에도 부합하고 법률체계성이나 산재예방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방향임
 - 당장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면 중처벌의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업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적정한 수준의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법률 개정 시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대표이사만 경영책임자로 특정하여 수사 및 기소를 받고 있는 현행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하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원청의 책임범위도 구체화되어야 함
 - 또한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방식 전환과 함께 산안법 체계와의 법률 정합성 제고 필요
- 내년부터 중처벌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어진 여건에서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폭적인 지원책 마련이 적극 필요함
 - 중소기업도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처벌요건 및 의무내용을 명확화·단순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현행 중처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 시기 추가 유예*를 검토해야 할 것임

*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22.12.22), 현재 2년 간 유예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에 대해 89.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응답

- 또한 중처법 등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의 육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산업안전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산업 전반의 안전역량 제고와 지속 발전의 기반을 조성해야 함
-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처벌부터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키우며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산업 전반의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해당 법률에는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안전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 확산, 안전산업 육성 및 안전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 마련, 노사 및 민간기관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체제로의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처법 개정 노력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기준도 현장과 업종의 현실에 맞게 신속히 정비하여 사업장 주도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해야 함
- 「중대감축 감축 로드맵」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서는 중처법 개정과 산안안전 법령 개편, 위험성 평가 제도 강제화 등 관련 제도 개선 등이 동시에 연계되어 추진 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자율예방체계 구축·운영’ 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기업의 노력 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근로자의 높은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가능
- 정부의 산재예방행정조직은 처벌보다 예방기능 및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 산재예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처법 수사·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임
- 중처법 제정 후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확대되었으나 예방기능 및 역할이 미진하며, 수사·감독의 경우에도 해당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적극 필요 <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서정현

□ 서론

-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그럼에도 사망자수의 상당 비율이 300인 미만 사업장('21년: 77.6%, '22년: 73.1%)에서 나오고 있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 지원 필요

< 최근 2년간 산재사고 사망자수 발생 현황 >

구분	합계	50인(억) 미만	5인(1억) 미만	5~50인 (1~50억)	50인(억) 이상	50~300인 (50~120억)	300인(120억) 이상
'21년	683	435	161	274	248	95	153
'22년	644	388	128	260	256	83	173
증감	△39	△47	△33	△14	8	△12	20

(자료 : 고용부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23.1.)

- '22.1.27.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오히려 전년대비 늘었음
- 정부는 사망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이유를 기업이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한 바 있음(자료 :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2.11.).
- 그러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의무사항을 모르고, 대응여력도 부족한데 안전보건 투자를 늘릴 수가 없음
 - * 중소기업(5~299인)의 65.6%는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77%는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호소(자료 : 중기중앙회, '22.12.)

<사례 1>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이 아예 없는 상황으로, 중처법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 및 기술투자에 애로가 큼니다”(철근가공업체 A사)

<사례 2> “중소기업은 안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시피 하고, 노후화된 설비를 모두 수리·교체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큼니다”(한지제조업체 B사)

-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는 줄이지 못하고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 중소기업 현황 및 과제

1. 노사자율과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중대재해처벌법」은 단 한 번의 사망사고라도 발생하면, ①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②법인 벌금 ③행정제재 ④징벌적 손해배상까지 4중 처벌을 부과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매우 큼
 - * 50인 이상 중소기업 중 58.8%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응답(자료 : 중기중앙회, '22.12.)
- 중대재해 사고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함에도, 1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국내법이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엄격함
 - 중소기업은 99%가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과도한 징역형은 기본적인 경영유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조차 어렵게 할 우려
 - * 국내법 중 1년 이상 징역 하한을 둔 것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형법)'이나 '불법 마약재배(마약류관리법)' 정도에 불과하고,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어디에서도 산재사고에 대해 징역 하한을 둔 곳은 없음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내용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를 들어,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었을 때 전문가들조차 관점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판단이 달라지는 실정임(법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50인 이상 중소기업 중 38.6%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일부만 알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자료 : 중기중앙회, '22.12.)
-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확신을 갖고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는 안전보건 조치를 하기 어려움
 - 불명확한 의무를 알아서 이행하도록 맡겨놓고, 정부는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만 하는 현행 방식은 기업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임
- 또한, 산재예방은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아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임

<사례> “근로자들에게 위험하면 설비를 멈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60개 설비 모두에 센서를 달았는데, 이제는 근로자가 아예 임의로 코드를 뽑고 일하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전관리자가 60개 설비를 계속 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면 되는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플라스틱 제조업체 E사)

2) 개선방안

(1) 사업주 처벌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합리화

-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징역 하한에서 상한(예: 7년 이하)으로 바꾸고, 상해 발생에 따른 처벌 수준도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수준을 감안하여 완화 필요(예: 5년 이하)*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선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사업주 의무사항(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정부 인증제 운영

- 정부가 사전에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여, 인증 받는 경우 법원이 양형 시 해당 분야 처벌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고려하도록 조치 필요

(3) 노사간 책임과 의무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작업현장에서도 안전수칙 미준수 시 처벌 등 불이익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 필요

* 현재는 보호구 착용, 출입금지 등 매우 제한적인 안전수칙 준수 의무만을 부여

2. 중소기업 안전투자 비용 지원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50인 이상 중소기업은 이를 준수하기 위한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
 - *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35.1%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비용 정부 지원 확대(73.6%)'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중기중앙회, '22.5.)
 - **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74.1%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그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46.1%)', '법률자체 불명확성(29.2%)', '과도한 비용 부담(21.7%)'으로 나타남 (자료 : 중기중앙회, '22.1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진 점이 없어 현장 안착이 지연되고 있음
 - 안전투자 비용지원 및 컨설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50인 이상은 융자만 지원 중이며, 안전 전문인력 관련 지원사업은 아예 없음

< '23년도 정부 산재예방 주요 지원사업 현황 >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규모	비고
안전투자 혁신사업 ('23년말까지 한시 운영)	뿌리·고위험 3대 업종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비용의 50% 지원 (사업장당 최대 1억원)	5,070억원	561억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유해위험요인 개선)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설치비용의 50~70% 지원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 전문가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무료 컨설팅 지원	381억원	224억원↑
산재예방시설융자	전체 사업장 (300인 미만 우선지원)	산재예방 시설·장비 설치/교체 비용 융자 지원	3,563억원	-

- 그마저도 정부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알고 활용해 본 중소제조업체는 16.8%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현장수요에 맞추어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함(자료 : 중기중앙회, '21.12.)

<사례> “소규모 사업장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워낙 상승하여 원가 압박이 심한데, 안전 비용까지 추가로 지불하라고 하니 부담이 큼니다. 방호 덮개나 인터록 장치,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일단 회사가 돌아가는 게 우선이다보니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보건공단 등에 재정 지원을 문의해봐도 50인 이상이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합니다.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부분에 한해 지원비율을 낮춰서라도 정부가 부담을 완화해주면 좋겠습니다.”(기타방직업체 C사)

2) 개선방안

(1) 안전투자 혁신사업 상시화 및 지원 확대

-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지원한도가 높고, 지원품목이 제한되지 않아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현장 수요가 많음

<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선(안) >

구 분	기 존	개 선
운영기간	'23년말까지 한시 운영	상시화
지원대상	뿌리+고위험 3대 업종* 50인 미만 사업장	뿌리+고위험업종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규모	위험기계 2,000여대, 위험공정 2,200여개소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 (현장 수요 확인)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고무제품 제조업, ▲수제품·기타제품제조업

(2)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지원 확대

- 산재발생 이력이나 위험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비율 등 확대 필요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개선(안) >

구 분	기 존	개 선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300인 미만 고위험업종 사업장 추가
지원한도	3천만원 *단, 고위험업종 등은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5천만원 *단, 고위험업종 등은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지원비율	50~70%	80%

(3)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 주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소속 기업들의 안전관리 지원하면, 정부·지자체에서 인건비 등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대기업·공기업 등에서 웃돈을 주고 안전 전문인력을 대거 흡수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자 구인난 심화
 - * 중소기업 절반 이상(55.4%)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전문인력 부족'을 꼽음(자료 : 중기중앙회, '22.5.)
 - 안전관리자 교육훈련 과정 등을 확대하여 적정인력을 공급할 필요

3.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최소 2년 이상)

1) 현황 및 문제점

-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는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고, 그 수만 해도 68만개에 달해(50인 이상의 약 15배)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절실
 - 현재도 열악한 제반 사정으로 인해 안전투자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법 적용시기('24.1.27)까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며 성급하게 법 적용 시 범법자만 양산될 우려가 큼
 - * 조사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93.8%가 '준비기간 부여 또는 법 적용 제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자료 : 중기중앙회, '22.12.)
- 정부는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1만 6천개소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 지원물량이 전체 사업장수 대비 약 2% 정도에 불과하고, 50인 미만 고위험 업종 5개*로 한정하더라도 총 8만개소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함
 - * ▲플라스틱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펄프·종이제조업, ▲인쇄업 (고용부 안전관리 가이드북 배포 업종, '22.10.)
- 특히, 영세 중소기업일수록 산재사고 발생률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나 고령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일손 부족 등으로 현장 교육은 참여하기 어려움
 - 안전보건공단에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나 고령자 맞춤형 콘텐츠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

<사례> “중소기업은 손 하나가 부족한 실정이다보니 외부로 교육 한번 보내는 것도 벅찬 실정입니다. 결국 회사 안에서 자체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통역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교육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

2) 개선방안

(1)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 '24.1.27.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예방교육이 필요한 만큼, 최소 고위험업종(5개, 8만개소)의 80% 이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을 때까지 최소한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 필요

(2) 50인 미만 사업장 컨설팅 및 교육 지원 확대

- 컨설팅 : '24년부터 지원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1만6천개→3만2천개소), 2년 이상 지속하여 고위험 업종만이라도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함(3년간 총 지원물량 8만개소)
- 교육 : 외국인근로자, 고령자 대상 실효성 있는 인터넷 교육 운영 및 콘텐츠 확대

I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문제점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중대재해는 늘었는가?

구분	사고사망자 수			사망사고 건수		
규모	2021년	2022년	증감	2021년	2022년	증감
전체	683명	644명	-39	665건	611건	-54
50인 이상	248명(36%)	256명(40%)	+8	230건	226건	-4

<재해조사 대상 통계 현황>

- 2022년 중대재해는 2021년 대비 사망사고자 수는 39명(5.7%), 사망사고 건수 54건(8.1%) 감소하였음. 다만, 중처법이 적용된 50인(억)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자 수가 증가

※ 재해조사 대상 통계

- 산안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여부 판단에 감독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노동자 수	18,974,513명	19,378,565명	20,212,030명
재해자 수	108,979명	122,713명	130,319명
사고재해자 수	92,383명	102,278명	107,222명
사고사망자 수	882명	828명	874명
사고사망자 수 (50인 이상)	168명(19%)	158명(19%)	209명(24%)
산재예방 예산	659,049백만원	1,182,606백만원	1,243,386백만원

<산업재해 승인 통계 현황>

2.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중처법 불확실성 해소를 필미로 중처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축소, 처벌 완화 등의 개악을 공언하였음
- 중처법은 시행령을 통해 13개로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분명히 했음. 이를 위험성평가, 재발방지대책 등 일부 조문만 핵심 사항으로 두는 것은 축소이며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확행하겠다고 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월권행위로 내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연구용역의 내용 중 고의와 반복된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라는 연구용역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보임
- 관련한 의제를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TF를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노사 추천 없이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로드맵 자체가 거짓말로 점철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으로서 노사에게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했으나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의견수렴이 아닌 통보로 끝날 것으로 보임
-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인증제를 추가하는 것은 여당이 발의한 중처법 인증제를 통한 처벌 감경 및 면제 개정안과 뜻을 같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움

○ [기획재정부] 중대재해 개정 연구용역 월권행위

- 기획재정부는 소관부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처법 개정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월권행위를 하였음. 또한, 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비공개를 유지하다가 국회에 공개요구에 마지못해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비정상적인 태도를 유지함
- 추후 공개된 기재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있음. ①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반복적 의무 위반만 처벌하거나 자연인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경제벌(과징금) 전환 등 ②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와 관련하여 적용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50인 미만 사업장 자체를 적용제외 하려는 등 연구용역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까지 노동부에 전달한 것은 월권행위의 증거임
- 기재부는 산재예방 및 감소를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경영계의 로비만 받아들여서 중처법 개악 시도를 하고 있음
-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과 감소를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재부가 돈줄을 틀어막고 방해하고 있음, 매년 일터에서 2,000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고 병드는 원흉 중 하나가 기재부임

- 지난 2006년, 200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를 노사정이 합의했음
- 중처법에서도 제16조(정부의 지원)을 통해 정부가 산재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 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일반회계를 2006년 150억 원에서 2021년 183억으로 늘리는 데 그침.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율은 0.3%대에서 0.2%대로 오히려 감소하여 기존에 3%를 목표로 한 합의를 역행하고 있음

○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 6. 17. [21160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등 10인) 발의, 경영책임자 처벌 감경 및 면제를 목적으로 법무부가 중대재해 예방의 기준을 고시하여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받은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봐주겠다는 법안
- 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실제 법에서 작동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활용(산안법 제13조) ▲노동자 디지털 감시 및 통제로 악용될 수 있는 법적 사항이 아닌 정보통신 시설 설치(바디캠, CCTV 등) ▲기존의 인증제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인증제도를 산재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부부처(노동부)가 아닌 경영책임자 처벌 감경 및 면제를 목적으로 법무부 권한을 주려는 점

○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넓히려는 윤석열 정부

- 1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은 한국노총이 우려했던 대로 “답정너”식 결론이 나왔으며 정부는 예정대로 권고안에 화답하고 있음
- 전체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률이 14%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권고안에서 나온 대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 변경을 노동자대표, 노동자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지 않고 사용자의 편의대로 변경될 것
- 유연해지는 연장노동시간에 따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사고의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SPC 사고)
- 또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 확대는 곧 장시간 노동, 단기간 과로를 불러일으키며 과로사가 급증할 것임.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고시의 기준을 보면, 발병 전 단시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상태)이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

- 정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권고안을 받아들여 사실상 과로사,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을 방치, 방임, 권장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함
- 노동시간 증가와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며 권고안대로 노동시간이 개악된다면 장시간 노동, 단기간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이 급증할 것

○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와의 관계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와 비교하여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률은 4배 이상 높아짐
- 핀란드 국립산업보건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노동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할 때보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10시간 근무할 때 15%, 12시간 근무할 때 38%, 12시간을 초과하면 147% 높아짐
-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주일에 5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40시간 이하로 근무했을 때보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이 1.17배 높아지고, 뇌졸중의 위험이 1.35배 높아진다고 밝힘
- 한국노총 소속 제조업 사업장 등을 분석한 결과(2012),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 미만인 사업장에 비교하여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률은 2.29배로 더 높은 결과를 보임

1.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필요

- 중처법은 제정과정에서 정부부처의 관료 중심적 사고와 경영계의 로비 때문에 후퇴하였고 경영계에서 불명확하고 모호하다고 주장하는 조문들은 후퇴한 결과의 부작용임
- 중처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대부분의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후퇴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 중처법을 개정한다면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대표이사로 한정) ▲발주자 책임 명확화 ▲벌금의 하한선 설정(징벌적 벌금 도입) ▲현장 훼손, 사실은폐 등 형사 처벌규정 신설 ▲적용제외 사업 및 사업장 삭제(5인 미만 사업 법 적용) ▲양형 절차 분리(국민양형위원회제도 도입) ▲인과관계추정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직업성질병의 확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의 적정 인력 배치 등의 인력 및 예산 산정 도입(2인1조 작업 등) ▲경영책임자 안전 보건교육 강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의견

○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제2조)

- (문제점) 기발의안이었던 ‘박주민의원안’ 과 달리 제정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으로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모호해짐
-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기존의 CSO(보안·전략) 부분의 임원을 안전 임원으로 왜곡하여 처벌 회피에 몰두하고 있음
- (개선방안) 경영책임자 정의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 이사로 명확화하여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함

○ 벌금형 하한선 설정(제6조)

- (문제점) 기발의안이었던 ‘박주민의원안’ 과 달리 제정법은 벌금의 상한선을 두어서 결과적으로는 중대한 사망과 그에 준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사법부의 재량권이 축소된 결과가 나타남
-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행하지 않는 것임으로 벌금의 하한선 도입이 필요함

- 또한, 입법 취지에 맞게 벌금보다 산재예방에 필요한 비용이 저렴하다면 산재예방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선방안) 중대재해치사상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선 삭제 및 하한선 설정(징벌적 벌금 도입, 법인의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

○ 현장 훼손, 사실은폐 등 형사처벌규정 신설

- (문제점)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문제는 사용자 측에서 기업경영을 위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하거나 사고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등에 문제가 발생
- (개선방안) 사고현장 훼손, 사고원인 조사 방해, 사고사실 은폐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처벌 신설

○ 적용제외 사업 및 사업장 삭제(제3조)

- (문제점) 본법은 상시 노동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기준법, 산안법, 중처법 등이 모두 적용제외 되는 무법지대임
-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서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상시 노동자 수와 업종에 연연하여 적용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 (개선방안) 제3조(적용범위) 내용 자체를 삭제하도록 함

○ 손해배상 하한선 설정(제15조)

- (문제점) 중대한 재해를 입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경우 사실상 노동 및 일상을 영위한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대다수임. 이럴 때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있음
- 본법은 손해배상의 상한선을 두어서 잘못하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상한선을 삭제하고 하한선을 두어서 사법부의 재량권을 두고자 함
- (개선방안) 제15조(손해배상)의 상한선 5배 이내를 삭제하고 하한선 도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중대재해 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노동자 참여보장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1.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과 중대재해 현황

○ 집행되지 않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

- 처벌법의 성격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판 결과가 누적된 이후에 판단해야 함. 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는 34건으로 15%에 불과함. 검찰 기소는 12월 5건을 포함하여 11건에 불과하며 모두 중소기업에 집중. 재판 진행은 2건에 불과하며, 시행 1년인 오늘까지 단 1건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음. 감독관 직무규정의 구속수사 기준도 적용되지 않고, 압수수색도 실종되어 된 엄정한 법 집행에 따른 기업의 예방노력 선순환도 실종되고 있음
- 기소의견 송치나 검찰 기소가 중소기업 비율이 높고,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내사종결도 20%를 상회 함. 과로사를 포함한 직업성 질병 사망은 배제되고 있음

○ 경영계와 보수전문가의 여론 호도, 윤석열 정부의 개악 추진이 법의 정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를 가로막고 있음.

- 2022년 6월 재단법인 경청이 중소기업 1천곳 사업주 대상 조사에서 79.4%는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답변. (제조업 78.5%, 건설업 77.5%) 찬성 이유로는 하도급업체 책임 떠 넘기기 방지 44.7%, 안전분야 투자 촉진 22.5%로 응답. 2022년 9월 헤럴드경제가 국회의장실과 공동으로 실시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지금보다 강화해야’ 53.9%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17.6%에 불과함. 경영계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보수언론이 쏟아내는 여론 호도는 중단되어야 함.
- 법의 제정 취지에 반하여 법률자문 계약과 서류작성에 치중하는 한국 기업의 후진적 인식과 후안무치한 행태가 비판받아야 함에도, 이를 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연계시키는 것은 근거도 논리적 개연성도 없는 억지 주장임.
- 법 제정 이후 2021년 사고사망은 54명 감소했고, 2022년 6월까지 감소 추세였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법 개악 추진이 다각적으로 추진되면서 7월 기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등 중대재해 증가. 사고사망 중 10여 건 이상이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 발생. 윤석열 정부의 법 개악 추진이 그나마 일부 진행되던 기업의 예방 노력을 중단 및 후퇴시키고 있음

- 법의 시행 효과는 엄정한 재판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기에는 법 제정 자체로 기업의 법 준수 및 안전투자를 유도, 사회적 관심 제고로 인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러한 효과가 기대보다 낮은 것은 분명하고, 이는 경영계와 보수전문가 및 여론의 호도, 윤석열 정부의 개악추진 및 노동부 행정 및 감독의 문제에 기인함.

○ 중대재해 증가 분석이 필요하다.

- 사고사망이 증가했고, 특히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증가했다' 라는 단순 분석으로 법의 실효성을 논하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며. 법 개악을 위한 <답정너> 주장에 불과함. 1%도 안 되는 노동부 감독의 현실,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숫자,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비율 등 안전보건 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한 기반이 턱없이 취약한 현실을 무시하고, 무지하거나 의도가 반영된 주장임.
- 노동부 정책과 감독이 집중되었던 떨어짐, 기임, 부딪힘, 지붕 사고 사망은 감소추세를 유지함, 그러나, 채석장, 물류창고, 항만 바지선, LPG 충전소, 대전 아울렛 화재참사 등과 같이 노동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증가함. 건설현장의 이동식 크레인, 제조업의 지게차는 '기계장비 투입율의 증가, 특수고용 형태로 예방의 사각지대 방치, 산안법의 원청책임 사각지대' 등의 문제로 계속 사고사망이 증가해 왔고, 노동계의 법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았던 영역임. 광주 화정동, 여천 NCC등 노후산업단지의 화재 폭발 참사 등과 같이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한 대형 참사도 대책 없이 반복 발생하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음.

2.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 방향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 '처벌보다 예방' 누가 막고 있는가?

-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처벌 만능'을 주장한 바가 없음. 예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진행되어도 숨방망이 처벌로 법 위반 비율이 80-90%인 현실 개선이 법 제정의 취지임. 안전투자보다 법률자문에 비용을 투입하고, 현장 안전점검과 종사자 의견 수렴보다 서류작성과 제출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증원 및 강화보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자 빼 내오기에 급급한 것은 경영계임.
-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확대'와 미 선임시 과태료 300만원 수준인 제재를 강화하자는 요구에 '기업부담 운운하며 초지일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경영계임. 최소한의 안전조치 개선도 노동부, 경제부처, 규제개혁위원회 등 단계마다 반대와 반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매년 수 십개의 규제완화 요구를 제출하고 있음.

- 처벌보다 예방을 운운하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 안전보건 원청책임 강화나 이동노동자, 방문노동자 예방대책 제도화, 심지어 폭염등에 대한 예방조치 하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노동부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핵심 대책으로 추진하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노동부 정책과 사업에서 실종되었음
- 중대재해 처벌법 무용론을 주장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촛촛하게 정비하고, 노동부 감독행정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으나 양자는 배치되는 것이 아님. 2015년 대비 감독관 100% 증원이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또 다시 반복할 수는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가능한가 ?

- 2018년 산안법 전부 개정에서 정부입법예고안에는 <건설업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은 3년 이상의 형사처벌> <산업안전보건법 38조, 39조 등 산재사망 1년 이상의 형사처벌> <원청의 산안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동일하게 적용>이 있었음. 그러나, 국회에 이송되기도 전에 정부 입법안의 형사처벌 조항은 전부 삭제되었음. 국회로 이송된 정부법안의 <노동자의 위험작업 작업중지에 대한 불이익 처우 사업주 형사 처벌> 조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는 수차례 추진되었으나 좌절되었음. 산안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벌금 상향, 가중처벌 조항 도입, 매출액 대비 과징금 도입등 경제적 제재 강화도 중대재해 감축에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결과임.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되어서야 일선 현장에서 산업안전을 교육하고, 안전인력을 증원하고, 체계를 세우는 실질적이고 집단적인 현장 변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기업 현실임.
- 경영책임자 처벌을 산안법 개정으로 추진도 이미 진행된 바 있음. 그 일환으로 추진된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의무’ 부여임. 그러나, 상법상 500인 이상 기업이 별도 기준없이 기업 자체로 계획 수립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불과했으며, 이 조항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은 불가능 함. 2020년 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이 아니라 산안법 개정으로 연구용역과 전문가 포럼을 통해 나온 개정안은 <안전보건관리자가 대표이사에게 보고의무 신설>에 그침.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개탄과 분노에 직면함.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가 산안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임.
- 중소기업은 산안법으로도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실제 재판 결과와는 무관한 것임.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1심 재판결과 분석이 진행되어, 실행등의 형사처벌 자체가 거의 없고, 경영책임자가 아닌 공장장, 현장소장이 미미한 수준으로 있었음.

3. 중대재해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

- 노동부 연구용역에서는 산안법의 1심 재판결과 까지 평균 1년 3개월이 소요되었음.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사건의 경우 수사 범위의 문제, 적용 법리의 난이도를 고려 하더라도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 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것은 로펌의 법률자문이 기업의 법 위반 혐의를 부정하게 하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과도한 법 기술이 동원되고 있는 것임. 이러한 행태는 사업장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일선 현장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면 법 위반을 인정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조치도 거부하는 행태가 종종 나타나고 있음. 이는 법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법 기술자를 동원하는 기업의 대응행태가 원인임.
- 형사 처벌은 재판결과까지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장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작업중지명령>과 <노동부 감독>임. 그러나, 노동부는 <수사와 감독의 분리> <예방 중심의 감독> 이라는 기조를 내세우며 감독규정을 개정했고, 이는 현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통상 사고 발생 1주일 이내 진행되던 노동부 감독이 수 개월뒤 불시 감독으로 변경되고, 특별근로감독 대상도 제한 축소됨. 이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수사 중> 이라는 한마디로 중대재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함. 작업중지 명령은 협소한 범위에서 진행되고, 2022년 6월 기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명령은 30%노동부 감독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참여권이 보장되는 노동부 감독이 진행되고,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면서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의 문제가 드러나고, 개선대책도 수립되는 것임. 그러나, 경찰에서 일부진행하는 수사브리핑 조차 없는 노동부의 깜깜이 수사와 수사의 장기화, 감독의 변경이 중첩되어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이 예방으로 이어지는 확산 효과를 차단시키고 있음
- 혹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감독관이 처벌에 집중하고 현장 감독에 역량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법 제정의 역효과로 주장함. 그러나, 노동부 예방 감독의 물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 수사 때문에 감독이 후퇴하기 보다는 감독의 전문성과 전략부재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원인임. 중대재해 감독에 대한 수사 인력이 부족한 수사의 장기화나 부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수사 인력의 신규증원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아울러 중대시민재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법 적용 수사는 경찰의 별도 수사방침이나 해설서는 고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어 신뢰도가 낮음

4.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과 중대재해 감축 대책

○ 중대재해 처벌법의 공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

- 중대재해 처벌법의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함으로써 법 지행을 통한 예방효과를 높여야 함. 특히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의 권리 보장 및 안전보건 전문가의 심리절차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대법원의 산안법 양형기준 개정이 있었으나, 그에 따르는 처벌 강화 판결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한국의 법조 시스템에서 실질 처벌이 어렵다는 현실론을 앞세워 개정 대안을 추진한다면, 기간의 하한형 없는 산안법 형사처벌이나 경제적 제재 중심의 처벌이 갖고 왔던 문제점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함.
- 중대재해 처벌법 심의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여 논란이 증폭된 경영책임자의 <이에 준하여> <급성 중독등>의 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10만 동의청원 법안에 있었으나 삭제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인과관계의 추정, 공무원 책임자 처벌 조항등을 보완하여 복원하여야 함.
-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있음. 일회성 지원 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을 중심으로 예방대책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각급 산업단지, 00 거리, 아파트형 공장, 지식센터 등에 <중소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추진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자체의 책무, 지자체 산재예방 지원 조례 등에 명시된 중소기업 지원을 활용한 사업을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노사 배제한 중대재해 처벌법 개선 TF 논의 중단

-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했음. 11월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 하겠다”고 명시하여, 미래시장 노동연구회에 쏟아지는 질타와의 차별적 진행으로 제출했으나 두 달도 안되 입장을 번복함. 2023년 1월11일 정부와 전문가로만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일방적 발족. <상습, 반복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6월 법안 마련, 하반기 법 개정 추진을 발표함. 20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준비상황, 현실적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언급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추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처리의 장기화, 압수수색, 구속 수사의 실종으로 처벌법의 집행 무력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 노동부임. 1건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예방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개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함.

○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 및 친기업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단

- 민주노총은 2021년 중대재해 근본 대책으로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 확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의 일치도 제고를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 및 전체 노동자 산안법 전면 적용>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면 적용 및 실질화> 등을 요구했고, 법 제도 개선 방안도 제출한바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추진 논란으로 중대재해 근본 대책 수립은 논의조차 실종되었음.

- 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 ①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 없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 대책
 - ② 기업 처벌과 감독은 완화하고 노동자 처벌과 징계 확대하는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처벌/예방규정으로 분류 축소,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의무 취업규칙과 연동 제도화.
 - ③ 건설업, 하청 노동자, 중소기업 중대재해 대책은 실종.
 - ④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 방안 실종

5.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은 한국사회가 노동자 시민의 비통한 죽음의 행진에 대한 통렬한 반성으로 기업의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전환의 갈림길.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실한 집행은 시대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며, 개악과 무력화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역행하는 것임.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여야 함.

코카콜라음료 김동하 파트리더

1. 중대법 시행1년 사업장 변화

'22. 1. 27일 중대법 시행으로 사업장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21년에는 중대법 대응TF팀(안전보건Project)을 운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중대법 이행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다. '23년에는 중대법 대응TF팀을 발전시켜 상시 중대법 이행 전담조직으로 출발하였다.

본사 전담조직에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중대법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미비사항 개선조치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임자 업무수행 수준 평가, 종사자 의견청취, 유해위험요인 개선, 도급·용역·위탁 적정성 평가, 재해 재발방지대책 이행, 대관점검 개선·시정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비상 대응훈련 실시여부, 안전보건법령 준수 의무 등 9가지 항목이 포함되었다.

보완사항으로는 안전보건 관리(총괄)책임자 업무수행 수준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결과 모니터링 체계구축, 비상대응훈련 실시 효과성과 적정성 점검 프로세스 구축, 안전보건 법규 준수 평가역량 부족 소규모 사업장 지원 등이었다.

보완 사항	보완 내용
1. 책임자 업무수행 수준 평가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관리책임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 보완 필요
2.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변경 교육, 특별교육,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실시 결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3. 비상대응훈련 실시여부	비상대응훈련 실시에 따른 훈련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본사 전담조직 주관 하에 점검하는 프로세스 구축 필요
4. 안전보건 법규 준수 의무	안전보건 법규 준수평가에 대한 점검 방법과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전문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체계 구축 필요

2. 중대재해 발생현황 및 사고조사

상해사고의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등급	A등급(심각)	B등급(경계)	C 등급(주의)	D 등급(관심)
상해 유형	- 사망자 1명 이상 - 부상자(3개월 이상 요양)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동시 10명 이상	- 중상자 1명 *뇌 등 주요 장기의 손상, 신체 주요 부분 상실 또는 변형, 신체 기능 영구 상실 등	- 부상자(3일 이상 휴업) 1명	- 경상자(3일 미만 휴업) 1명

자사 기준 A, B등급에 속하는 중대/중상 사고는 중대법 시행 전·후 발생하지 않았다. 과거 사고사례와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안전 핵심 리스크는 지게차 충돌사고, 청소 유지·보수 작업시 잠금·표시 장치(Lockout-Tagout, LOTO) 미적용, 외주공사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파악되었다. 지게차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안전기술을 적용하여 중대사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투자를 하였다.

사고조사팀은 사고의 중대성과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 도출 필요성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 1명과 중대법 전담조직의 인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하였다. 사고조사 프로세스는 사업장 자체조사와 별도로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은 4주(20일) 이내에 개선 완료하고 안전보건 경영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내용에는 개선비용과 시간 등 세부내용을 개선완료 사진과 함께 보고한다. 개선완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추가 정밀진단에 즉시 착수한다.

3. 중대법 실효성 향상방안 제언

3.1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9가지의 의무를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조에서는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 4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물론 기업 차원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사업장별로 다양한 산업 안전에 관한 특성으로 인하여 실제 개별 시행령상의 의무들이 준수되었는지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대법 전담조직이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신규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정기, 특별 등 안전보건교육의 종류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40종에 이르고 제조업의 경우 대상 작업을 정리해 보면 20종에 달한다. 이러한 점이 현실적으로 전담조직이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집체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다. 특히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교육은 중대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국가, 공공·민간 기관, 회사 등에서 함께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비상대응훈련의 경우에도 현재 본사에서는 부서별로 위험공정에 대한 비상사태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훈련부서의 시나리오가 1개인 경우에는 상.하반기 반복하여 2회 실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반기 1개, 하반기 1개 훈련해도 되는지 아니면 상반기 2개, 하반기 2개 반복하여 훈련해야 하는지 애매하다.

정부가 작년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차사고 등 지난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발굴하는 과정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사항이다. 로드맵을 통해 자기규율예방체제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교육 진행여부 점검, 비상 대응훈련 실시 등 세부적인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나열하는 것보다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중대법상의 의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기업이 집중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통해 법 이행 과정에서의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2 위험성평가, 사고조사의 법적, 제도적 보완 필요

위험성평가의 보급·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013년 위험성평가제도 도입으로 안전분야에 이 기법이 도입된지 10년이 되었다. 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위험상태를 개선하는 등 일정부분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4M기법, KRAS지원시스템 등에 매몰된 부정적 측면도 존재하였다. 이제는 좀더 세분화해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 설비, 생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규·노후 설비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장점으로서는 간단하게 한 장으로 설비 투자의 근거와 투자시 위험감소 정도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제조업 설비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여 끼임사고 등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절차마련이라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

현장 위험파악 및 개선은 위험성평가 기법이나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여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작업자가 자기가 다루는 기계나 작업하는 공간의 위험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를 관리감독자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론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에서는 8단계 절차에 의해 매일 실시한다. 현장 작업자가 손으로 기록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기 때문에 기록을 최소화하도록 했지만 관리감독자는 주요 사항을 정리해서 위험성평가에도 반영하고 개선에 활용하며 일일 안전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한다.

안전은 관리체계를 갖추고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사고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위험에 대한 안전의식이 소홀해지는 안전불감증의 상황을 노리고 그 틈을 파고든다. 이때가 안전에 대한 구성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사고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솔루션을 사고조사자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 사고조사, 교육전문가 등이 힘을 합해 쓸모있는 사고조사 과정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교육인원과 노하우가 쌓이면 산업안전보건 사고조사 전문가 자격과정도 만들고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기술사 등이 이수토록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고조사 전문 인원을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중대재해 사례는 발생상황, 예방대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력수준의 근로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하는 책자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1권에 약 50가지 사례정도 넣어서 6권정도 만들어 주면 자기 일과 관련하여 위험상황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안전인지 능력이 300가지를 체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 사례는 모두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체 구성원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법에 의무화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입건, 구속 등의 중대사고도 정리해서 민간에 공유해주면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3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인증, 안전문화 향상활동 촉진

중대재해 발생을 ‘ZERO’화하는 무재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ISO45001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도 필요하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자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평가하고 지속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율 안전보건 인증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은 규칙을 준수하고 이행하라고 하거나 규칙을 어기지 말고 따르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위험 상황과 작업자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작업자도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을 담은 미래지향적인 기업의 자체적인 중장기 인증시스템 운영은 각 사업단위 관리책임자가 주도적으로 안전에 임하고 관리감독자가 현장을 통제 조정하여 안전을 확보하는지를 검증하고 안전한 방법을 제안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실제 현재 많은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우수한 인증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30대기업, 제조·건설·서비스 등 주요 업종별로 인증활동 사례를 정리하여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공유되기를 바란다.

코카콜라는 글로벌 사업장 전체에 14가지 안전 핵심사항을 담은 인명보호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업 전에 안전 생각하기, 위험상황과 대책 말하고 행동하기, 업무수행에 적절한 능력 갖추기, 협력회사 및 방문자 안전 보호, 작업허가 및 안전확인, 고소작업 추락예방, 안전장치 작동확인, 에너지 차단 및 잠금표시 적용, 밀폐공간작업 안전확보, 화기작업 안전, 화학물질 보건안전, 안전구역 확보를 위한 출입 통제, 지게차 충돌예방, 차량 안전운행이 그 내용이다.

인명 보호 규정 (Life Saving Rules)

- ✓ 심각한 사고, Audit 결과 및 Coca-Cola system 분석에 따라 아래와 같은 Life Saving Rule이 선정되었습니다.
- ✓ 모든 구성원이 LSR을 인식하고 실천하여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갑니다.



1 작업 전에 생각하기 (THINK SMART BEFORE YOU START)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수행한다.



2 보고, 말하고, 행동하기 (SEE, SAY, DO SOMETHING)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와 자신의 생명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음. 위험요인,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 말하고 액션을 취해야 한다.



3 수행업무에 적절한 스킬 (RIGHT SKILLS FOR THE TASK)
자신과 동료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트레이닝, 자격, 스킬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자 및 방문자 안전 (CONTRACTOR & VISITOR SAFETY)
계약자, 벤더 그리고 방문자가 항상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허가(권한부여) (WORK PERMIT (Authorization))
항상 시작 전에 잠재위험 분석이 완료되어야 하고, 권한이 적절히 부여되어야 하고, 작업 승인되어야 하며 작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6 고소작업 (WORK AT HEIGHT)
고소작업 시에 자신을 주축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7 안전 장비 (SAFE EQUIPMENT)
위험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가드, 압축기 안전 밸브, 누전차단기와 같은 안전설비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8 에너지가 공급된 시스템의 작업 (SAFE WORK ENERGIZED SYSTEMS)
잠재적인 에너지 또는 압력이 가해진 설비에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에너지 공급이 차단(LOTO)되고 잠재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9 밀폐공간 (CONFINED SPACES)
밀폐공간 출입 전에 적절한 권한을 획득하고 공간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화기작업 (HOT WORK)
화기작업 전에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물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11 유해화학물질 (HAZARDOUS CHEMICALS)
모든 화학물질을 MSDS와 위험성평가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고, 저장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2 안전구역 (SAFE ZONES)
움직이는 차량/설비 또는 높은 곳의 적재물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구역에 위치한다.



13 지게차 (FORKLIFTS / LIFT TRUCKS)
자량이 정상적인 상태이며 인증받고 자격부여가 된 경우에 지게차와 같은 동력차량을 운전하여야 한다.



14 안전운행 (SAFE DRIVING)
안전운행 수칙을 숙지하라. 차량 안전 설비와 안전운행은 자신과 모두를 안전하게 한다.

안전사고의 발생이 위험행동에 의해 88%를 차지한다는 하인리히 이론을 받아들여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수칙 준수율이 100%가 될 수 있도록 BBS안전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사고 및 향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21개 행동을 선정하여 BBS활동을 실시하였다.

BBS시행결과 초기 79% 안전행동율에서 1개월 후 81%로 3%p증가하여 조금이기는 하지만 안전행동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안전행동율이 100%가 될 수 있도록 3~5년간 꾸준히 지속하여 우수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